

▣ 참여연구진

저 자 김민영, 양원탁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민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양원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요약

1. 연구개요

□ 연구배경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25.7.23) 공포됨('25.8.14)에 따라 법 시행('26.8.15)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함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 포함하기 어려운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함
 - 전체 22조로 구성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20개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조항을 설계해야 함

□ 연구목적

-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하여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함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행령에 직접 반영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선별하여, 향후 마을기업 육성·지원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추가 과제로 제시함

□ 연구방법

-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검토하여, 법령에 포함해야 할 내용과 지침으로 남길 내용을 구분함
- 유사 법률·시행령 분석을 통해 법령의 조문 구조와 규정 방식을 비교·검토하여 시행령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함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법제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지원기관, 당사자 조직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집하여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함

2. 주요 연구내용

1) 시행령 제정안 마련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20개 조문을 중심으로, 각 조문이 요구하는 규정 범위와 내용을 검토함
- 조문별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분석해 시행령에 포함해야 할 요소를 선별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유사 제도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시행령 조문을 설계하는 참고 근거로 활용함
- 또한, 지자체 담당자, 마을기업지원기관, 마을기업 당사자 조직 등 이해관계자와 법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령 조문 초안을 마련함
 - 지자체 담당자, 마을기업 지원기관, 마을기업 당사자 조직, 법제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별로 제기된 주요 쟁점을 유형화하여 정리하고, 제도 운영상 문제와 개선 요구를 도출함
 - 수렴된 의견을 시행령에 직접 반영 가능한 사항과 법률 개정 또는 중장기 정책과제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향후 시행령 제정과 정책 과제 도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

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과제 제안

(1) 방향성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도출되었으나 시행령 제정만으로는 반영이 어려운 사항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과제로 제시함
- 과제의 성격과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단기 과제와 정책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함

(2) 단기 과제

- 실질적 사업기간 확보: 지방비 확보 지연으로 사업비 교부가 늦어져 실사업 기간이 축소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정 체결일을 기준으로 실제 1년의 사업기간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실태조사 주체 관련 불일치 해소: 시행지침과 법률 간 실태조사 주체 규정이 상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이 규정한 구조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조사 권한을 위임하고 지원기관이 이를 위탁 수행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되, 기초자치단체장을 실태조사 주체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검토가 요구됨

(3) 중장기 행·재정 지원 과제

□ 유형별(농촌형·도시형)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농촌형 마을기업이 겪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지역 유형별로 지원 요소를 차별화하는 체계가 필요하나, 이는 정책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간 생산시설 공동 활용 기반 마련

- 지역 간 자원 활용도와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체계 구축이 중장기 과제로 제기됨

□ 지역순환경제 기반 신규 사업모델 개발

- 마을기업이 지역순환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잡도록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기본소득마을 등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 실험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무장 지원 제도 도입

- 전담 인력 부재로 대표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무장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일부 지역에서의 유사 사례도 참고 가능함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판로 지원 확대

- 제품 품질 고도화, 브랜드 구축, 홍보 강화 등을 위한 전용 예산 확보와 수도권 판매 거점 마련,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 등 판로 확대 전략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 마련도 필요함

(4) 중장기 추진체계 개선 과제

□ 중앙 단위 지원기관 구축

- 전국 단위 DB 관리, 홍보, 교류 행사 등 광역적 기능을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현재 법률에는 중앙 지원기관 설치 근거가 없어 시행령만으로는 도입이 불가능하여, 제도화에는 추가 논의와 법률 개정이 필요함

□ 기초지자체 단위 지원기관 구축

- 현장 밀착형 지원 수요는 높지만, 현행 법률이 시·도 단위 지원기관만 규정하고 있어 기초지자체 단위 기관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필요성 검토와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으로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과제로 제시됨

□ 마을기업협회 운영 안정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 협회는 정책 건의, 홍보, 역량 강화, 연계 구축 등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나 재정 기반이 시·도 회비에 의존하고 있어, 협회가 법정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운영비·사업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중장기 과제로 제기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4

제 2 장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법률 제정 현황

제1절 마을기업 육성사업 개요	9
1. 마을기업 개념 및 의의	9
2.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연혁	9
3. 마을기업 지원 원칙 및 내용	10
4.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체계	13
제2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4
1.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14
2. 법률 체계	15
제3절 유사 법률의 주요 내용	16
1. 유사 법률 검토의 필요성	16
2. 사회경제조직 관련 법률 개요	16
3. 특정 집단 기업 지원 관련 법률 개요	21

목 차

제 3 장 마을기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제1절 이해관계자별 주요 의견	27
1. 의견 수렴 절차	27
2. 의견 수렴 결과	27
제2절 법제 전문가 의견	35
제3절 주요 의견별 시행령 반영 여부 종합	40
1. 시행령 반영 여부 검토 기준	40
2. 시행령 반영 여부 검토 결과	40

제 4 장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임체계 분석

제1절 법률 위임 조항의 구조와 내용	51
제2절 조문별 위임사항의 구체화	60
1. 마을주민 정의에 관한 사항(법 제2조제2호)	60
2.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법 제6조제5항)	66
3. 실태조사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법 제8조제3항)	71
4. 중앙위원회 설치·대체 규정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1항)	76
5.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제6호)	80
6. 중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3항)	84
7. 시·도위원회 대체 규정에 관한 사항(법 제10조제1항)	87
8. 시·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법 제10조제2항)	91
9. 마을기업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법 제11조제1항제2호·제5호)	97
10. 마을기업 지정 절차·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법 제11조제2항)	103

11.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법 제12조제1항제5호)	109
12. 마을기업 우대 기준에 관한 사항(법 제12조제3항)	115
13. 마을기업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법 제13조제3항)	117
14. 마을기업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법 제14조제1항)	124
15.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자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제3항)	125
16. 마을기업지원기관 설치·지정·운영에 관한 사항(법 제16조제5항)	128
17.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1항)	134
18. 위탁 기관·법인·단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2항)	137
19.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2항제3호)	142
20.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법 제22조제3항)	147

제 5 장

시행령 제정과 향후 정책과제

제1절 시행령 제정안	155
1. 법률 및 시행령 위임 체계	155
2. 시행령 제정안	157
제2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과제	164
1. 방향성	164
2. 단기 및 중장기 과제	164
참고문헌	169

표 목차

표 2-1	시도별 마을기업 현황	10
표 3-1	이해관계자 주요 의견별 시행령 반영 여부 종합표	40
표 4-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51
표 4-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51
표 4-3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52
표 4-4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53
표 4-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54
표 4-6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55
표 4-7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55
표 4-8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56
표 4-9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57
표 4-10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57
표 4-1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58
표 4-1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59
표 4-13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59
표 4-14	시행지침상 마을주민 정의에 관한 사항	60
표 4-15	시행지침상 마을기업 지정 요건	61
표 4-1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	62
표 4-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0조	63
표 4-18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64
표 4-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	64
표 4-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65
표 4-2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66
표 4-22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제7조	67
표 4-23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	68

표 4-2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4조	69
표 4-2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	70
표 4-26	시행지침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2
표 4-2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6조	73
표 4-28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제7항·제8항	74
표 4-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제4항	75
표 4-3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제6조·제7조	77
표 4-31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의2	78
표 4-3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79
표 4-33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81
표 4-3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제7조	81
표 4-35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의2	82
표 4-36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조	82
표 4-3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	83
표 4-3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제6조·제7조	84
표 4-39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의2	85
표 4-40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85
표 4-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	86
표 4-42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88
표 4-43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의2	89
표 4-4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제4항	89
표 4-45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91
표 4-46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0조	92
표 4-4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94
표 4-4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제35조	94
표 4-49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99
표 4-50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99

표 목차

표 4-51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100
표 4-52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7조	101
표 4-5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102
표 4-5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3항	104
표 4-55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105
표 4-56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106
표 4-57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	107
표 4-58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107
표 4-5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제2항	108
표 4-6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16조	111
표 4-61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2~제11조	113
표 4-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제3항	114
표 4-6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120
표 4-6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	120
표 4-65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121
표 4-66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122
표 4-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	122
표 4-6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2	124
표 4-69	「협동조합 기본법」 제12조	125
표 4-7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제4항	126
표 4-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10	127
표 4-7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	130
표 4-7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	131
표 4-7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4~제21조의6	131
표 4-7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제16조	133
표 4-7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제1항	135
표 4-77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3조	135

표 4-78	「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	136
표 4-79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제1항	138
표 4-80	「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제3항	138
표 4-81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139
표 4-8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제15조의3	140
표 4-8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제1항	141
표 4-8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	141
표 4-8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제4항	143
표 4-86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144
표 4-8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제1항	145
표 4-8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제1항	146
표 4-8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	146
표 4-9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148
표 4-91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4조	148
표 4-92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149
표 4-93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5조	150
표 4-9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0조의2	150
표 4-9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3조	151
표 5-1	법률 및 시행령 위임 체계	155
표 5-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전문	157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5
그림 2-1 마을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구분	11
그림 3-1 마을기업 지정 절차	103
그림 3-2 마을기업 대상 권장 교육내용	110
그림 3-3 기초자치단체 청년인구비율에 따른 청년회원비율 기준	116
그림 3-4 마을기업 지정 취소 절차	118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25.7.23) 공포됨('25.8.14)에 따라 법 시행('26.8.15)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함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 포함하기 어려운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함
 - 전체 22조로 구성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20개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조항을 설계해야 함

2. 연구목적

-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하여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함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행령에 직접 반영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선별하여, 향후 마을기업 육성·지원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추가 과제로 제시함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대상 범위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내 시행령 위임사항

□ 내용 범위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 분석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마련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과제 제안

2. 연구방법

□ 문헌조사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검토하여, 그동안 운영해 온 기준과 절차 중 법으로 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담고 현장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세부 절차는 지침으로 남김
- 이러한 접근은 2011년부터 시행된 마을기업 육성사업 정책 틀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함

□ 유사 법률 및 시행령 분석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른 사회적 경제조직이 근거를 둔 법령의 유사 조문을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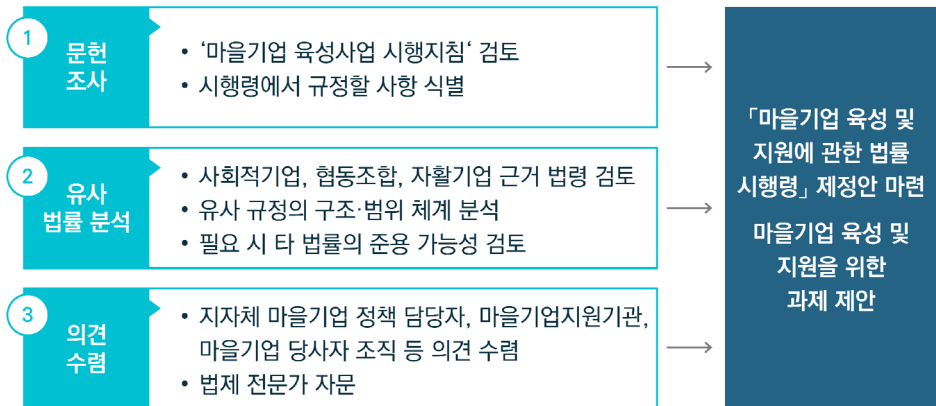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등을 검토함

- 사회적 경제조직 관련 법령을 우선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의 유사 조문을 분석함

□ 의견 수렴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실무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법제 전문가, 지자체 마을기업 정책 담당자, 마을기업지원기관, 마을기업 당사자 조직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함

| 그림 1-1 | 연구흐름도



출처: 연구진 작성

제 2 장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법률 제정 현황

제1절 마을기업 육성사업 개요

제2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제3절 유사 법률의 주요 내용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법률 제정 현황

제1절

마을기업 육성사업 개요

1. 마을기업 개념 및 의의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의미함
- 단순한 경제조직을 넘어 공동체적 운영 원리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한 유형으로, 주민 자치와 지역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의의를 가짐

2.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연혁

-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0년 행정안전부가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한 이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음
-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기업 모델로서 지역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
-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예비마을기업’ 제도를 도입하여 준비단계 공동체를 발굴·육성하였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1~3회차) 지원체계를 마련해 자립과 고도화를 도모하였음

3. 마을기업 지원 원칙 및 내용

□ 마을기업 지정

- 마을기업은 지역성,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을 핵심 요건으로 함
 - 지역성은 동일 생활권 주민의 참여와 지역 자원의 활용을 의미함
 - 기업성은 자립 가능한 수익구조와 시장 경쟁력을 의미함
 - 공동체성은 주민 출자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운영되는 구조를 의미함
 - 마지막으로, 공공성은 지역사회 공헌과 상생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며, 지정 이후에도 운영 원칙을 준수해야 함
-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1,700여 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음

【 표 2-1 】 시도별 마을기업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4년	1,726	84	61	97	57	66	63	48	33	193	139	92	155	117	209	148	121	43
'23년	1,800	95	72	101	58	72	63	51	35	208	142	94	162	120	209	148	127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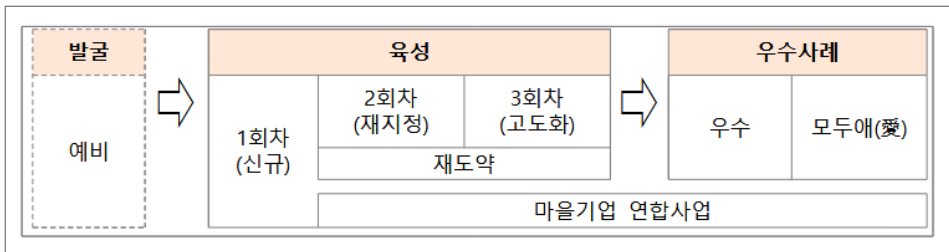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2025) 2쪽

□ 마을기업 지원 내용

-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기업의 성장 단계와 성격에 따라 다른 지원을 제공함
- 초기 설립부터 안정적 운영, 성장·확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예비마을기업, 1회차(신규),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재도약 기업, 우수 및 모두애(愛) 기업, 그리고 연합체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 예비마을기업은 주민 공동체가 법인화를 준비하고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는 초기 단계로서, 소규모 보조금과 교육·컨설팅을 지원받음
 - 1회차(신규) 마을기업은 본격적으로 처음 지정받아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로, 최대 5천만 원의 보조금과 기본 경영교육,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함

- 이어지는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은 일정 기간 운영 경험을 축적한 후 재지정을 통해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으며, 전문 교육과 경영 컨설팅을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둠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은 운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으며, 마케팅과 판로 확대 등 고도화된 경영 전략 수립에 집중함
- 한편, 운영 과정에서 부진을 겪는 기업을 위해 재도약 마을기업 제도가 운영되는데, 맞춤형 컨설팅과 최대 1천만 원의 지원금을 통해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성과가 뛰어난 기업은 우수마을기업 또는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지정됨
 - 우수마을기업은 지역사회 공헌과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서 모범을 보인 기업으로, 최대 7천만 원의 인센티브와 홍보·마케팅 지원을 받음
 - 모두애 마을기업은 매출과 브랜드 가치가 입증된 간판급 기업으로, 최대 1억 원의 지원과 함께 전국적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받음
- 마지막으로, 마을기업 연합체는 동일 지역 내 3개 이상의 마을기업이 협업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공동 설비 확충, 제품 개발, 마케팅 등 최대 3억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림 2-1| 마을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구분



출처: 행정안전부(2024) 11쪽

- 또한 각 기업이 주로 수행하는 활동과 지역사회 기여 방식에 따라 지역자원 활용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마을 관리형 등으로 유형화됨
 - 지역자원 활용형은 지역에 존재하는 특산물, 관광자원, 자연·문화 자산 등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 유형임
 -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돌봄, 교육, 복지 등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임
 - 마을 관리형은 마을의 공용 자산을 운영하거나 지역재생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유형임
-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단계에 따라 보조금 규모, 자부담 비율, 교육·컨설팅, 판로 지원 등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운영하지만, 사업 성격별로도 일부 차이를 두고 있음
 -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마을 관리형은 서비스 제공의 인력 의존도가 높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총사업비의 50%까지 편성할 수 있는 반면, 지역자원 활용형은 20% 이내로 제한됨
 - 지역자원 활용형은 사업계획서에 지역 자원 활용 방안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마을 관리형은 정관이나 사업계획서에 해당 서비스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명시하고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해당 분야에 배정해야 함
- 또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특정 지역과 계층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우대 혜택을 마련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되는 마을기업은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함
 - 청년마을기업의 경우,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한해 자부담 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고, 지역주민 비율 요건도 완화하며,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함

4.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체계

-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원기관이 협력하는 다층적 구조로 운영됨
- 행정안전부는 법령 제·개정과 시행지침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기업 지정 및 취소 권한을 보유하며, 자립 기반 조성 및 성장 지원,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총괄함
- 광역자치단체는 마을기업 모집 공고, 예비마을기업 지정, 광역 차원의 심사와 추천, 보조금 지급 및 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을 담당함
 - 또한 소속 지역의 마을기업 지원기관을 선정·관리하여 현장 지원을 체계화함
- 기초자치단체는 지정 신청 접수, 현장 실사 및 적격성 검토, 약정 체결, 사업비 집행 승인, 실태조사와 점검 등 마을기업과의 밀착형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함
- 마을기업 지원기관은 기업 발굴과 심사 지원,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제공, 판로 확대와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실질적인 현장 지원 기능을 담당함

제2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 제정 목적

- 마을기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주요 내용

- (마을기업 정의) 마을기업을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으로 정의함(제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시·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 (마을기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의 구성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 (마을기업지원기관 설치·지정) 시·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2. 법률 체계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로서 5개 장과 22개 조문으로 구성됨

□ 장별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 동법의 목적,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마을기업의 역할 및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
- (제2장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체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 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제3장 마을기업의 지정 및 지원) 마을기업 지정,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마을기업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제4장 마을기업 육성 기반조성) 마을기업의 날,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마을기업지원기관, 마을기업협회, 포상,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제5장 보칙)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동일명칭 사용금지, 과태료 등에 관하여 규정함

제3절

유사 법률의 주요 내용

1. 유사 법률 검토의 필요성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마을기업과 성격이 비슷한 사회경제조직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규율하는 여러 법률이 존재함
- 또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특정 집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도 마련되어 있음
- 이번 절에서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이러한 유사 법률을 검토하기에 앞서, 각 법률의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2. 사회경제조직 관련 법률 개요

1)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정 목적

-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통합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령 체계

- 해당 법률의 하위 체계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이 있음

□ 주요 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당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회적기업의 정의
 -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로 정의함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사회적기업의 인증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인증요건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설치되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조직형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 각종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연계기업

-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협동조합 기본법」

□ 제정 목적

-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법령 체계

- 해당 법률의 하위 체계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이 있음

□ 주요 내용

-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당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협동조합의 정의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 조직으로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설립 가능하며,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는 각각 법인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함

○ 협동조합의 기본원칙

- 협동조합 등은 조합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상호협력 증진에 노력하여야 함
-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3년마다 협동조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용함

○ 협동조합의 설립

-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협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탈퇴·제명 시 지분환급청구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환급청구권)을 갖도록 하고, 총회·대의원·이사회·임원·감사 등 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되, 금융 및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함

- 협동조합의 회계
 - 협동조합의 잉여금에서 100분의 10 이상(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 이용실적 및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가능(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불가능)하도록 함
-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청산
 -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요건·절차와 협동조합의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 협동조합의 등기
 - 협동조합의 설립, 지사무소의 설치, 이전, 변경, 합병, 해산 및 청산 등 주요 사항을 등기하도록 함
-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들은 설립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 부여하며,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회원, 기관, 회계, 합병·분할·해산·청산 및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를 할 수 있으나,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 상호부조는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정 목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활기업의 근거 법률임

□ 법령 체계

- 해당 법률의 하위 체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음

□ 주요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으며, 제정 당시에는 자활기업 관련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음
- 이후 2012년 2월 1일 일부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자활기업 관련 조항이 법률에 도입됨
 - 광역자활센터가 실제로 지정·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도 단위 광역자활센터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중앙자활센터의 기능에 수급자·차상위자의 취업·창업에 위한 자활촉진프로그램 개발·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음
- 개정 내용 중 자활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가 자활기업 창업지원, 기술·경영 지도, 설립·운영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18조(자활기업)을 신설하여 자활기업의 설립 주체, 법적 형태, 국가 및 보장기관의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3. 특정 집단 기업 지원 관련 법률 개요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제정 목적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법령 체계

- 해당 법률의 하위 체계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음

□ 주요 내용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정 당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기업 등의 정의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당해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중 장애인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장애인기업으로 정의함
 -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당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장애경제인으로 정의함
- 차별적 관행의 시정요청
 -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초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함
 -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 목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법령 체계

- 해당 법률의 하위 체계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음

□ 주요 내용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여야 함
 -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여성의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둔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해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지원관련 사업자를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물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증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토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함
- 차별적 관행의 시정
 -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설립
 -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 활동촉진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 설립하고 동 협회사업 지원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의 창업지원등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교육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기업종합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 3 장

마을기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제1절 이해관계자별 주요 의견

제2절 법제 전문가 의견

제3절 주요 의견별 시행령 반영 여부 종합

마을기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제1절

이해관계자별 주요 의견

1. 의견 수렴 절차

- 본 연구는 마을기업 관련 제도 개선 방향과 시행령(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였음
- 먼저, 2025년 9월 23일 연구과제 착수보고회를 통해 한국마을기업중앙협의회 이사와 경북 마을기업지원기관 센터장의 자문을 받았음
- 이후 행정안전부는 2025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마을기업 15년의 성과, 함께 그리는 30년의 비전’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이번 워크숍에는 지방자치단체, 마을기업지원기관, 마을기업 당사자 조직, 마을기업 사업자 등 마을기업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마을기업의 역량 강화와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음
- 특히, 11월 4일에 진행된 ‘마을기업 파트너십 세션’에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음
- 또한, 워크숍 이후에는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약 일주일간 서면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집하였음

2. 의견 수렴 결과

- 지방자치단체, 시·도 마을기업지원기관, 마을기업 당사자 조직(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시·도 연합회 등)별로 주요 의견 수렴 결과를 정리하였음

1)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마을기업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마을기업지원기관이 제시한 의견은 현장에서 마을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음
- 사업기간의 현실적 보장, 지원 범위의 확장, 사업비 집행의 유연성 강화, 지정·취소 절차의 명확화, 기초지자체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 기관 간 역할 분리, 자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 위원회 전문성 강화, 공공조달 진입 기반 마련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되었음

□ 실질적인 사업기간 확보

- 지방비 확보 지연으로 인해 사업비 교부가 늦어지고 실제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구조로 운영되며, 특히 광역도 지역의 경우 국비 50%, 광역도비 15%, 기초지자체비 35%로 구성됨
 -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추경 이후인 3~4분기에야 사업비가 반영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마을기업은 사업비 지원 절차에만 약 2개월이 소요되고, 사업 수행기간이 당해 연도 내로 제한되면서 실제 사업 기간이 3개월 수준으로 축소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여건에서 마을기업이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정 체결일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1년의 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교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착수 시점을 앞당기고, 예산 반영 지연에 대비해 사업 기간을 연차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필요 시 다음 연도로 연장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요구됨

□ **지원 항목의 구체화 및 확대**

- 마을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가공비, 시험·인증 비용, 허가 등록을 위한 전문가 활용비 등을 지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사업비 집행의 유연성 확보**

- 사업비 집행 과정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음
 - 예를 들어, 우수마을기업 지원사업에서 당초 계획된 시설비를 차량 구입이나 유통비로 조정하려 했으나, 예산 항목 변경이 제한되어 현장의 효율적 집행이 어려웠다는 사례가 보고되었음

□ **마을기업 지정 요건 명확화**

- 마을주민 기준에 대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지자체는 ‘해당 읍·면·동 내 거주자’뿐 아니라 ‘해당 지역 내 직장에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마을주민으로 인정해야 현장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음
 -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나 주민 생활권 등을 고려해 활동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읍·면·동이 아닌 시·군·구 단위로 범위를 넓혀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마을기업 지정 요건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과거 지침에서 인정되던 융통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마을기업 지정 취소 절차 보완**

- 기업이 스스로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음
- 또한, 지정 취소 검토 후 결정까지의 처리 기한을 30일 이내로 명시하고, 지정 취소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동일 시·군 내 마을기업, 이어서 광역 및

전국 단위로 순차적으로 이관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공매 처리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음

□ 기초지자체 단위 지원체계 강화

- 마을기업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단위 확산을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 (시·군·구)별 지원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광역 단위의 지원만으로는 현장 밀착형 지원이 어렵고, 기초 단위 기관이 사업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직접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실태조사 시 기관 역할 명확화 및 자본재 관리 절차 도입

- 실태조사 관련 조문에서 기관 간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마을기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관리 주체는 해당 마을기업이 소재한 관할 기초자치단체이며, 지원기관은 실태조사와 현장점검 등 관리·지원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규정되어 있음
 - 이러한 기관별 역할이 시행지침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만큼, 법령이나 시행령에서도 동일한 체계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음
- 자본재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마을기업 사업비를 통해 자본재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특히, 매년 1회 실시되는 실태조사 시점에 물품대장 확인, 자산의 내용연수 관리, 관리권한 이행 여부 점검 등의 절차를 포함함으로써, 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컨설팅·교육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시·도위원회 구성

- 시·도위원회 구성에 마을기업 컨설팅·교육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도입

- 마을기업 성장을 위해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사회경제조직뿐만 아니라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다양한 기업 유형을 함께 살펴보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는 이들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진입을 허용받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함임
-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마을기업은 관련 규정이 없어 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옴

2) 마을기업 당사자 조직

- 마을기업중앙협회, 지역 연합회 등 당사자 조직은 현장의 운영 기반 강화, 재정·판로 지원 확대, 지정·지원 기준의 현실화, 중앙 단위 지원기관 및 거버넌스 구축,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확보, 중앙협회 운영 안정성 강화, 제도의 상징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폭넓게 제안하였음

□ 마을기업 운영 기반 강화와 제도 혁신

- 대부분의 마을기업이 인력 부족과 행정 업무 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무장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현재 많은 마을기업은 전담 인력이 없어, 회계 관리, 서류 작성, 온라인 판로 기획 등 주요 업무가 대표자 한 명에게 집중되고 있음
 - 이러한 구조는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유발하여 ‘사무장 지원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사무장 지원 제도는 과거 전북 마을기업과 정보화마을에서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언급되었음
- 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공공자산 임대료가 높으므로, 공공자산 무상 사용이나 임대료 감면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또한, 인접 지역의 생산시설을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생산시설 공동 활용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내구연한과 사용 실태를 고려해 자산 처리 기준을 현실화하고, 물품 종류에 따라 관리 기한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기본소득마을 모델 등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형 모델을 제안하며, 마을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지역순환경제 모델의 핵심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실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었음
 - 현재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발전소나 설비의 운영주체가 외지인인 사례가 많아 지역 주민에게 수익이 환원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이 직접 운영 주체가 되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구 단위로 배분하는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지역경제 순환과 주민 소득 증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마을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판로 지원체계 강화

- 마을기업의 재정 안정성과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정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우선, 등기임원을 제외한 일반 회원의 인건비, 임차료, 홍보비, 재료비 등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음
- 또한, 개별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시장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HACCP·ISO 인증, IT 시스템(ERP, 온라인몰) 도입, 특허·상표 등록 등 기업 고도화에 필요한 간접 지원 항목의 추가가 요구되었음
- 특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이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기되었음
 - 마을기업은 공공조달에서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아 시장 진입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 아울러, 판로 확보 예산 증액과 품질 고급화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마을기업 제품의 품질 향상, 브랜드 구축, 홍보 강화 등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또한, 수도권 지역 내 전용 판매 매장 설치를 통해 마을기업의 인지도 제고와 매출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구체적 제안도 포함되었음

□ **현장 현실 반영을 위한 마을기업 지정·지원 기준 재정비**

- 시행령(안)의 마을기업 지정 요건이 현장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농촌 지역의 인구 구조와 생활 환경을 반영한 보다 유연한 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 먼저, 특수관계인 범위를 6촌 이내 혈족까지 포함하도록 한 현행 시행령 규정이 농촌형 마을기업에 과도한 제약을 준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마을주민 비율 완화와 관련한 의견도 제기되었으며, 시행령(안)에 규정된 인구감소지역 외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까지 완화 적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었음
- 출자금 균등 노력 원칙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을 30% 이하로, 특정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를 50% 이하로 제한하는 정량적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마을기업의 성격과 발전단계를 고려해 농촌형, 도시형 등 유형별 지원체계를 구분하고, 평가 기준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현행 지원·평가 기준이 모든 유형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고령화와 열악한 환경에 놓인 농촌형 마을기업이 도시형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농촌형 마을기업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성장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체계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중앙 단위 지원기관 구축**

- 마을기업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차원의 제도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 중앙마을기업지원기관의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음
 - 전국 마을기업 실태조사, DB 구축 및 관리, 마을기업의 날 박람회 개최 등 주요 사업을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중앙위원회 구성의 마을기업 대표성 강화**

-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마을기업 당사자 조직의 대표성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협회 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거나 추천권을 부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심의에 직접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시·도위원회 대체 규정 도입 시 마을기업 이해도가 낮은 사회적경제 관계자가 위원회에 포함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로 인해 정책 방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음

□ **중앙협회 운영 안정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 협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도 회비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중앙협회의 운영비와 주요 사업비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 **마을기업 상징성 제고**

- 법 시행일(8월 15일)과 연계해 매년 8월 셋째 월요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제도의 상징성과 인지도 확산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제시되었음

제2절**법제 전문가 의견****□ 마을주민 기준**

- ‘마을주민’의 범위 설정 방식은 원칙 규정(읍·면·동 기준)과 예외 규정(시·군·구 기준 확대)을 명확히 구분하여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주민등록 요건을 판단할 때, 단순 전입신고만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충분한지, 혹은 일정 기간의 거주 요건(예: ○년 이상)을 추가로 둘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요소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마을주민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 등을 통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검토가 제시되었음

□ 기본계획 수립·변경·시행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서 항목별로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시행 각각에 대해 위임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 제시되었음
- 첫째,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수립 시점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예를 들어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또는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특정 시점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음
- 둘째,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지적되었음

- 다른 법령(예: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 시행령」)에서는 경미한 변경 시 심의를 면제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러한 근거가 없을 경우, 사실상 사소한 변경까지 모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행정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셋째, 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실태조사 주체

- 현행 법률은 실태조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구조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다”는 표현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실태조사의 범위와 역할 구분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가 각각 조사해야 할 항목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안되었음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자살예방법 시행령」 등에서 중앙과 지방의 조사 권한을 구분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혹은 실태조사 업무를 마을기업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정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한편, 연락 두절, 자료 미제출, 경영실적 전무 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영역인 만큼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중앙위원회 기능 대체 기구

-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대체 기구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 중앙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 조문 마련 여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중앙위원회 기능을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힌 경우, 별도의 구성·운영 조문을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시·도위원회 역할 및 기능

- 법률은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시행계획 심의 및 관할 구역 내 지원 시책 검토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안)에서는 ‘마을기업 지정’을 시·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포함하고 있어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문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마을기업을 지정하는 권한은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시·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임
- 그러나, 법률에서 지정권자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지만, 지정 절차와 관련된 세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적으로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이 법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음
 - 마을기업과 같이 지역과 밀접한 정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자연스럽기 때문임
 - 또한, 마을기업 육성은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행안부의 감독권이 유지되더라도, 실제 지역과의 접점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와 행안부 간 업무를 중간에서 조정하는 구조는 지방행정 운영에도 부합하며, 지방자치법에서도 국가와 시·군·구 사이의 연락·조정 기능을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인정하고 있음

- 더불어, 시행령에서 행안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면, 시·도지사에게 절차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위임 범위 논란을 일으킬 요소는 크지 않음
- 구성·운영과 관련된 추가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방식은 일반적인 입법례와 부합하나, 시·도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기능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없이 조례 위임만 두는 것은 체계상 미흡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기되었음
 - 위원회의 법정 기능을 법률 취지에 맞게 조정된 후, 구성·운영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마을기업 지정취소 절차

- 기초지자체장에게 지정취소 사유에 대한 사실조사 및 검토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법률은 지정취소 절차 중 ‘청문’의 실시에 관한 부분만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조사·검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판단임
- 그러나, 기초지자체장에게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행정상 협조 의무의 범위 안에서 사실조사 및 검토결과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음
 - 일반적으로 행정상 협조 의무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관계에서 인정되지만, 마을기업 지정취소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존재하므로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은 제도 취지와도 조화를 이룬다는 판단임
- 마을기업의 자진 지정취소 요청 자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행령에서 이를 신설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마을기업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이 이를 신설하는 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 제시되었음

- 그러나, 마을기업이 스스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절차라면, 이는 시행령이 새로운 강제력이나 권한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필연적 상황에 대비한 절차적 통로를 마련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법리적으로도 큰 문제될 여지는 낮다는 의견도 있음
 - 사업 수행능력 상실이나 사업 영위 불가능과 같은 상황은 법률에 명시된 지정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는 지정제도를 지속할 수 없는 본질적 사유이므로, 제도의 운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시행령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정취소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주체가 지정권자가 아니라, 마을기업 스스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절차라면 법률에 명시된 권한 구조를 훼손하는 것도 아님

□ 실태조사 및 마을기업 지원 업무 위탁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태조사 업무를 마을기업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신설은 법 제20조제2항의 위임 취지와 부합하며, 실태조사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접근이라고 평가하였음
- 또한, 법률에는 실태조사뿐 아니라 마을기업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도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마을기업 지원 업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 위탁 근거 또는 관련 조문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제3절

주요 의견별 시행령 반영 여부 종합

1. 시행령 반영 여부 검토 기준

- 이해관계자별 제안 사항에 대해 법제 전문가 의견, 행정안전부 검토 내용, 시행령 외 조치 필요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각 제안의 시행령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하였음
 - 여기서 ‘시행령 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없거나, 별도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을 의미함

2. 시행령 반영 여부 검토 결과

- 다음 표는 이해관계자 주요 의견별 시행령 반영 여부를 종합한 것이며, 이후 본문에서는 제안 내용에 대해 시행령 반영 여부와 그 판단 근거를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하였음

| 표 3-1 | 이해관계자 주요 의견별 시행령 반영 여부 종합표

이해 관계자	주요 제안 내용	법제 전문가 의견	행안부 의견	시행령 외 조치 필요 여부	시행령 반영 여부
지방 자치 단체	실질적인 사업기간 확보	-	반영 불가	○	X
	지원 항목 구체화 및 확대	-	-	X	○
	사업비 집행의 유연성 확보	-	-	○	X
	마을기업 지정 요건 명확화	-	-	X	○
마을 기업 지원 기관	마을기업 지정 취소 절차 보완	-	지정 취소 검토 후 결정까지 처리 기한 추가 반영 불가	○	△
	기초지자체 단위 지원체계 강화	-	-	○	X

이해 관계자	주요 제안 내용	법제 전문가 의견	행안부 의견	시행령 외 조치 필요 여부	시행령 반영 여부
	실태조사 시 기관 역할 명확화	법률상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가 실태조사 주체이므로, 마을기업지원 기관에 업무 위탁	-	X	X
	실태조사 시 자본재 관리 절차 도입	-	-	X	○
	컨설팅·교육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시·도위원회 구성	-	-	X	○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도입	-	-	○	X
마을 기업 당사자 조직	마을기업 운영 기반 강화와 제도 혁신	-	-	○	X
	마을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판로 지원체계 강화	-	-	○	△
	현장 현실 반영을 위한 마을기업 지정·지원 기준 재정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대상 마을주민 비율 완화 불가	○	△
	중앙 단위 지원기관 구축	-	-	○	X
	중앙위원회 구성의 마을기업 대표성 강화	-	행안부 정책자문위원회 활용 계획	X	X
	중앙협회 운영 안정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	-	○	X
	마을기업 상징성 제고	-	대국민 공모로 지정	X	X

주: 시행령 외 조치 필요 여부에서 '○'는 시행령 이외의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X'는 시행령 내에서 반영이 가능한 사항을 의미함

시행령 반영 여부에서 '○'는 반영, '△'는 일부 반영, 'X'는 반영 불가를 의미함

음영은 시행령에 전부 혹은 일부 반영한 항목을 나타냄

출처: 연구진 작성

1)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기업지원기관 의견에 대한 시행령 반영 여부 검토 결과

□ 실질적인 사업기간 확보(시행령 반영 불가)

- 지방비 확보 지연으로 인해 사업비 교부가 늦어지고, 그 결과 실제 사업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음
- 이로 인해 약정 체결일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1년의 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행정안전부는 약정 체결일 기준으로 사업기간을 1년 확보하는 방식이나 사업기간을 연차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임
- 또한, 사업기간 관련 사항이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에 반영할 수 없으며, 관련 요구는 향후 정책 개선이나 예산 운영 방식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리되었음

□ 지원 항목 구체화 및 확대(시행령 반영)

- 마을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공비, 시험·인증 비용, 각종 허가 등록을 위한 전문가 활용비 등을 지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이러한 비용은 마을기업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항목으로 판단되었으며, 법령상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였음
- 이에 따라 시험·인증 및 허가 절차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비를 지원 항목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음

□ 사업비 집행의 유연성 확보(시행령 반영 불가)

-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예산 항목 간 전용이 어렵다는 점이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집행 유연성 문제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법령 위임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예산 집행 절차에 관한 사안으로 분류되었음

□ 마을기업 지정 요건 명확화(시행령 반영)

- 마을주민의 범위를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 내에서 직장에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마을주민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조문을 작성하기로 하였음
-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읍·면·동 단위를 초과해 시·도 단위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예외 규정도 마련하기로 하였음
- 마을기업 지정 요건 중 특수관계인 기준은 지나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그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축소하여 운영하도록 조정하였음

□ 마을기업 지정 취소 절차 보완(시행령 일부 반영)

- 지정 취소 검토와 결정까지의 처리 기한을 30일 이내로 명시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음
- 반면, 지정 취소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동일 시·군 내 마을기업부터 광역·전국 단위로 순차적으로 이관 여부를 확인한 뒤, 이관 대상이 없을 경우 공매로 처분하는 절차는 시행령에서 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음

□ 기초지자체 단위 지원체계 강화(시행령 반영 불가)

-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마을기업을 보다 밀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별 지원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현행 법률은 시·도 단위의 마을기업지원기관 설치·지정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초지자체 단위 지원기관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이러한 이유로 해당 제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향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검토한 뒤 법률 개정을 통해 검토해야 할 과제로 정리되었음

□ **실태조사 시 기관 역할 명확화(시행령 반영 불가)**

- 시행지침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실태조사의 관리 주체로, 마을기업지원 기관이 현장점검과 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법률은 실태조사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어 지침과 법령 간의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되었음
- 법률이 부여한 구조 내에서 마을기업지원기관이 위탁을 받아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결정하였음

□ **실태조사 시 자본재 관리 절차 도입(시행령 반영)**

- 마을기업이 사업비로 취득한 자본재의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실태조사 항목에 ‘물품대장 확인 및 관리’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음

□ **컨설팅·교육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시·도위원회 구성(시행령 반영)**

- 시·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마을기업 컨설팅·교육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시행령에 ‘마을기업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 구성 요건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음

□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도입(시행령 반영 불가)**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은 마을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제기된 중요한 요구였으나, 이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법률 차원의 사안으로 판단되었음
-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마을기업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여성기업과 같이 공공조달 참여를 허용하는 법률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시행령에 반영할 수 없으며, 향후 별도의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정리되었음

2) 마을기업 당사자 조직 의견에 대한 시행령 반영 여부 검토 결과

□ 마을기업 운영 기반 강화와 제도 혁신(시행령 반영 불가)

- 마을기업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도입 요구가 제기되었으나, 이 중 상당수는 새로운 제도 신설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었음
- 특히, 공공자산의 무상 사용이나 임대료 감면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임대료 감면을 인정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마을기업을 개별 기업 단위로 무상 사용 또는 임대료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검토되었음
- 따라서 해당 의견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분류하되, 시행령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음

□ 마을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판로 지원체계 강화(시행령 일부 반영)

- 마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기된 다양한 지원 확대 요구를 검토한 결과, 운영경비 중 인건비 지원, 기술력 제고와 시장 확장을 위한 간접 지원 항목 중 시험·인증 및 허가 절차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비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지원 항목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음
-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 요구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되었음
 - 현재 관련 법령에서 마을기업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여성기업 등과 같은 별도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이를 신설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또한 판로 확보 예산 증액, 품질 고급화 지원, 전용 판매 매장 설치 등은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행령 규정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현장 현실 반영을 위한 마을기업 지정·지원 기준 재정비(시행령 일부 반영)**

- 마을기업 지정·지원 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었으나, 검토 결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마을주민 비율 완화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확인되었음
- 반면,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약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범위를 축소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결정하였음
- 출자금 균등 노력 원칙은 최대 출자자 지분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50% 이하 등 정량적 기준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음
- 한편, 마을기업을 농촌형, 도시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의견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시행령 규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중앙 단위 지원기관 구축(시행령 반영 불가)**

- 중앙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중앙마을기업 지원기관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현행 법률에는 존재하지 않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다만 행정안전부가 마을기업 실태조사, DB 구축·관리, ‘마을기업의 날’ 박람회 개최 등을 협회에 위탁할 계획이 있을 경우, 시행령에 관련 위탁 규정을 둘 수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 계획이 부재해 시행령 제정 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음

□ **중앙위원회 구성의 마을기업 대표성 강화(시행령 반영 불가)**

-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마을기업 당사자 조직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중앙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부내 정책자문 위원회를 대체 기구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협회 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거나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이로 인해 해당 의견은 시행령에서 반영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리되었음

□ **중앙협회 운영 안정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시행령 반영 불가)**

○ 중앙협회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비와 주요 사업비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이와 같은 재정 지원 근거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며 행정안전부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었음

○ 따라서 해당 요구는 시행령 제정을 통해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정리하였음

□ **마을기업 상징성 제고(시행령 반영 불가)**

○ ‘마을기업의 날’을 법 시행일과 연계해 특정 날짜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행정안전부는 기념일 지정 시점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결정할 계획임을 밝혔음

제 4 장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임체계 분석

제1절 법률 위임 조항의 구조와 내용

제2절 조문별 위임사항의 구체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임체계 분석

제1절

법률 위임 조항의 구조와 내용

□ 마을주민 정의에 관한 사항(법 제2조제2호)

-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군·구 내 주소를 가진 자를 의미하되,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표 4-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2. “마을주민”이란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5.] [법률 제21017호, 2025. 8. 14., 제정]

□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법 제6조제5항)

- 법 제6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그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 차원에서 열거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 방법, 세부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음

【표 4-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의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
 3. 마을기업 인력양성 및 대표자와 구성원 교육 계획
 4. 마을기업지원기관 및 마을기업 종합정보시스템 등 지원체계 구축
 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
 6.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5.] [법률 제21017호, 2025. 8. 14., 제정]

□ 실태조사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법 제8조제3항)

- 법률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2년마다 마을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법 제8조제1항),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법 제8조제2항)
- 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표 4-3】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8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5.] [법률 제21017호, 2025. 8. 14., 제정]

□ 중앙위원회 설치·대체 규정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1항)

-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9조제1항에서 이미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위원회가 존재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음
-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대체 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규율하게 됨

□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제6호)

- 법 제9조제2항에서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로 필요한 심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중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3항)

- 법 제9조제3항에서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자격, 위원 수, 위원 임기, 위원장, 회의 운영 절차, 의결 방식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표 4-4】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 ①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마을기업의 사업에 관한 평가
3.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마을기업 포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5.] [법률 제21017호, 2025. 8. 14., 제정]

□ 시·도위원회 대체 규정에 관한 사항(법 제10조제1항)

- 원칙적으로 시·도별로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존재한다면 대통령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그 조직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 시·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법 제10조제2항)

- 시·도 위원회의 구성(위원 수, 자격 요건, 임기 등)과 운영 방식(회의 소집, 의결 절차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원적 위임을 하고 있음

표 4-5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 내 마을기업의 지원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시·도에 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5.] [법률 제21017호, 2025. 8. 14., 제정]

□ 마을기업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법 제11조제1항제2호·제5호)

-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주민 대표성, 법인성, 지역성 등과 같은 기본 요건을 제시하면서, 출자 구조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법 제11조제1항제5호는 마을기업 추가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마을기업 지정 절차·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법 제11조제2항)

- 마을기업 지정 절차, 심의 내용 등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표 4-6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마을기업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주민이 대표자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수·출자비율·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을 충족할 것
3.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등 법인의 형태를 갖춘 것
4. 마을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 절차·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5.] [법률 제21017호, 2025. 8. 14., 제정]

□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법 제12조제1항제5호)

- 법 제12조제1항제5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 중, 법률에서 명시된 사항 외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 마을기업 우대 기준에 관한 사항(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3항은 마을기업 우대 기준에 관련하여, 청년 구성 비율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표 4-7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2.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시설비·부지구입비 등의 지원·융자
4.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5. 그 밖에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출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5.] [법률 제21017호, 2025. 8. 14., 제정]

□ 마을기업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법 제13조제3항)

- 법 제13조제3항은 마을기업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임
-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조사 주체와 조사 방식, 조사 결과 확인 절차, 취소 전 기업에 부여할 소명 기회와 의견 청취 방식, 취소 결정 통보 절차와 시점, 지원금 반환 방식, 지정 취소 후 재신청 가능 시점 등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4-8】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5.] [법률 제21017호, 2025. 8. 14., 제정]

□ 마을기업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법 제14조제1항)

- 법 제14조제1항은 ‘마을기업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예컨대 ‘7월 마지막 주 수요일’과 같이 실제 기념일을 특정하는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임

| 표 4-9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마을기업의 날) ① 국가는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마을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마을기업의 날로 하고, 마을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마을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5.] [법률 제21017호, 2025. 8. 14., 제정]

□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자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법 제15조제3항)

- 법 제15조제3항은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자료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필수 정보(매출, 고용, 사업 분야, 사회적 기여도 등)와 자료 제출 의무 기관 및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음

| 표 4-10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자료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5.] [법률 제21017호, 2025. 8. 14., 제정]

□ 마을기업지원기관 설치·지정·운영에 관한 사항(법 제16조제5항)

- 법 제16조제5항은 마을기업지원기관 설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지원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주체의 범위(공공 기관, 공익법인, 민간단체 등), 지정 요건(전문 인력 보유, 재정 건전성, 사업 수행 실적 등), 지정 절차와 심사 방식, 운영 기준(보고 체계, 성과 평가 등)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음

[표 4-1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마을기업지원기관) ① 시·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2. 마을기업의 성과 및 사업보고서 검토
3. 우수 마을기업의 사례 발굴 및 홍보
4. 마을기업에 관한 지역 실태조사 및 연구
5. 마을기업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6. 마을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7.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③ 시·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운영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지원기관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설치·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5.] [법률 제21017호, 2025. 8. 14., 제정]

□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1항)

- 법 제20조제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위탁 기관·법인·단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2항)

- 법 제20조제2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를 마을기업 관련 전문 역량을 가진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어떤 기관·법인·단체를 수탁 대상으로 정할 것인지를 규정할 수 있음

□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2항제3호)

- 법 제20조제2항제3호는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외에 추가로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전국 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 새로운 위탁 업무를 추가로 명시할 수 있음

| 표 4-12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제12조에 따른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및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5.] [법률 제21017호, 2025. 8. 14., 제정]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법 제22조제3항)

- 법 제22조제3항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법률에서는 ‘1천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와 같이 최고 한도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실제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표 4-13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21조를 위반하여 마을기업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출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5.] [법률 제21017호, 2025. 8. 14., 제정]

제2절

조문별 위임사항의 구체화

1. 마을주민 정의에 관한 사항(법 제2조제2호)

1) 현행 제도 및 의견 검토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검토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마을주민’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시행지침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정의되어 있음
- 시행지침에서 사용하는 ‘지역주민’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마을주민’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며 실제로 상호 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정의됨

| 표 4-14 | 시행지침상 마을주민 정의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구분	정의
지역주민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
지역문제	지역 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요구) 사항이나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마을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거나 일상적 생활을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출처: 행정안전부(2024) 3쪽

- 또한, 시행지침의 마을기업 요건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해야 하는 기업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때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근로 중인 사람을 의미함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 기준)를 원칙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한정하고 있으나, 설립 목적이나 주민 생활권 등의 사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4-15】 시행지침상 마을기업 지정 요건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어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 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단, ‘인구감소지역’은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출처: 행정안전부(2024) 4쪽

(2) 유사 법률 및 시행령 검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을 법 제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은 사회적기업이 갖추어야 할 8가지 기본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운영기준 등 사회적 기업의 법적 성격과 운영 구조를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제1호(조직 형태), 제3호(사회적 목적 실현), 제5호(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제8호(그 밖의 운영기준)는 구체적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표 4-1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제8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를 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제9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서비스 제공비율,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정량적 지표로 구체화하고 있음
 - 제10조에서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을 설정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자립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4-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0조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9조(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가.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한다)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 「협동조합 기본법」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음
- 다만, 법률은 협동조합의 구성 요건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표 4-18】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르면, 자활기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으로 정의됨
- 이와 관련하여, 자활기업의 주체가 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수급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공적 지원을 실제로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함
 - 차상위자는 법 제7조제3항에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하는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의미함

【표 4-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차상위계층의 구체적 기준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음

| 표 4-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3)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마을주민의 범위를 해당 읍·면·동 거주자뿐 아니라, 해당 지역 내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 체계가 없는 지역적 특성이 있으므로, 읍·면·동보다 넓은 시·도 단위까지 마을주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2)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방향

- 마을주민 범위에 관한 시행령 조문은 시행지침을 반영해 생활권 단위인 읍·면·동을 기본 기준으로 정의하고, 주소지뿐 아니라 해당 지역 내 직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
- 아울러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과 주민 생활권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구역 구조를 반영해 시·도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관계자 의견도 함께 반영함

2.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법 제6조제5항)

1) 현행 제도 및 의견 검토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검토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시행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그동안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기본계획 없이 시행지침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임

(2) 유사 법률 및 시행령 검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의 추진방향,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음

| 표 4-21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 또한, 제5조제4항에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와 제7조는 이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 제6조는 법률에서 위임한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세분화하여,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경영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훈련, △재정지원계획, △그 밖의 사회적기업 관련 주요 시책 등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시행령 제7조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를 규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음

표 4-22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제7조

제6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사회적기업의 경영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
3. 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재정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주요 시책

제7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 「협동조합 기본법」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는 기획예산처장관이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3년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활성화 방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 △관계 기관 간 협력 방안 등 주요 정책 추진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11조제2항)

- 또한, 계획 수립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1조제3항)

표 4-23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한편, 제11조제4항에서는 중앙정부와 시·도 간 협의·조정을 위한 근거를 두고, 이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시·도 협동조합정책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음

- 다만, 법 제11조제5항은 협동조합 정책의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협의·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즉,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 절차와 내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는 구조는 아님

【 표 4-24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협동조합의 신고와 경영공시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과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각 시·도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6. 7.] [대통령령 제33498호, 2023. 6. 7.,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자활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은 별도의 자활기업 기본계획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초생활보장 정책 속에 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서 자활기업 인정 기준과 운영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활기업 차원의 독립된 기본계획 수립 조항은 두고 있지 않음
 - 대신 자활기업은 제20조의2의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의 일부 항목으로 포섭되어 있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주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임
 - 이 조항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3년마다 소관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급여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부처의 기본계획과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함(제3항)
 - 더 나아가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제4항, 제5항)까지 모두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하위법령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구조를 취하고 있음

【 표 4-2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6호, 2024. 9. 20., 일부개정]

- 유사 법률들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기본계획 조항에는 단순한 수립 의무를 넘어 중앙위원회의 심의 절차,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체계, 그리고 관계

기관에 대한 의견 또는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권한 등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2)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방향

- 기본계획을 새로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절차를 마련함
- 기본계획 수립·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 제출이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함
-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여 정보 공개성을 확보함

3. 실태조사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법 제8조제3항)

1) 현행 제도 및 의견 검토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검토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은 실태조사 방법, 대상,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시행지침에 따르면, 마을기업 실태조사는 매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모든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 조사 방법·대상·범위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이 지침 내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조사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되며,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마을기업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조사 업무를 담당함
- 주요 조사 항목은 △기업 일반현황(기업명, 위치, 회원 수, 연락처 등), △사업 성과(매출액, 고용인원 등), △공헌활동 실적 등으로 구성됨

- 조사 방식은 서류 제출(우편·이메일 등)을 원칙으로 하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자료가 부실한 마을기업의 경우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를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장방문 시에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원기관 담당자가 동행하여 조사 정확성을 높임
 - 또한, 행정안전부가 구축 중인 마을기업 통합 DB 시스템이 완성되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자료 제출도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조사 과정에서 연락 두절, 자료 미제출, 경영실적 전무 등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관리해야 하며, 필요 시 특별점검·제도약 지원·지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또한 실태조사 이전 단계에서 사전 모니터링 및 컨설팅 절차가 운영됨
 -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1월 전년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을 구분하고, 2~3월에는 지원기관이 현장 중심의 사전컨설팅을 실시한 뒤, 3~5월 실태조사 단계에서 자료를 수합·검증하는 구조로 진행됨

[표 4-26] 시행지침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조사 대상/기간: 모든 마을기업(매년 3~5월)
- 자료 작성기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 조사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마을기업 지원기관
- 조사 항목: 마을기업 현황(기업명, 위치, 회원수, 연락처 등), 사업성과(매출액, 임금근로자 수), 공헌활동 실적 등
- 조사 방법
 - 서류 제출(우편·메일 등)을 원칙으로 하되, 연락이 안 되거나 제출거부 또는 자료가 미흡한 마을기업은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 파악(현장방문 시 기초자치단체 직원과 마을기업 지원기관이 함께 방문)
 - 마을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가 실태조사표 작성
 - ※ 행안부에서 마을기업 DB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완료되면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
- 실태조사 시 연락두절 및 자료제출 거부, 경영실적 전무 등 마을기업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자치단체는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관리*하여야 함(특별점검, 제도약 지원, 지정 취소, 광역자치단체 심사 시 고려 등)
- * 적극적인 현장실사(1회) → 익년도 현장실사(2회)에도 미응답, 자료 미제출 등 → 지정 취소

• 사전 모니터링 및 컨설팅		
단계	역할	담당
1차 확인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전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 구분 - 필요시, 사업자번호 조회(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운영여부 확인 	기초자치단체
사전컨설팅 (2~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전달받은 실태조사 목적 및 방법 안내 • 필요시 현장 컨설팅(전문 컨설팅) 	지원기관
실태조사 (3~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기업으로부터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받아 작성 및 제출 - 연락두절, 제출거부, 자료부실 등 필요한 현장방문 	기초자치단체 지원기관

❖ 실태조사 관련 제출 서류

- 제출 대상: 모든 마을기업
- 제출 기간/방법: 매년 4월말까지 / 우편·팩스·메일 등 ※ 향후, DB 제출도 가능
- 제출 자료(전년도 12월말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2024) 55~56쪽

(2) 유사 법률 및 시행령 검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6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활동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법률에서는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대상,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조항 또한 존재하지 않음

| 표 4-27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6조

제6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 「협동조합 기본법」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제7항과 제8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협동조합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협동조합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법률에서는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대상,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이나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음

【표 4-28】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제7항·제8항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규모와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조항은 자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자활기업의 운영 현황이나 성과를 조사·분석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
- 또한, 법률에서는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범위,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같은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표 4-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제4항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유사 법률에서는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주체, 주기, 결과의 공표 및 보고 의무 등 절차적 사항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도 조사 대상·범위·방식 등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3)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마을기업이 사업비로 자본재를 구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되는 실태조사 과정에 물품대장 확인, 자산의 내용연수 점검, 관리권한 이행 여부 확인 절차를 포함함으로써, 자산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2)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방향

- 실태조사 조문은 법률이 정한 구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 지사가 실태조사 책임 주체가 되고, 실제 조사업무는 마을기업지원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정리함
- 조사 방식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 기본적인 방식뿐 아니라 필요 시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을 활용한 전자적 조사도 가능하도록 함
- 실태조사는 모든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사 범위는 기업 일반현황, 사업성과, 공헌활동 실적, 물품대장 및 자산관리 현황,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사업비로 취득한 자산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반영해, 실태조사 항목에 ‘물품대장 확인 및 관리’를 포함함

-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기간·조사목적·조사내용 등을 담은 실태 조사계획을 사전에 작성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조사 결과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중앙위원회 설치·대체 규정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1항)

1) 현행 제도 및 의견 검토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검토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행정안전부에 중앙마을 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동시에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행지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마을기업의 최종 심사 및 지정, 마을기업 연합사업의 최종 선정, 우수사례(우수마을기업, 모두애 마을기업 등) 심사·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이러한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기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한 공식적인 상설 위원회는 아님
- 따라서, 공식적인 명칭과 법적 근거를 갖춘 위원회 없이 행정실무 중심의 임시 심사체제로 마을기업 관련 사업이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임

(2) 유사 법률 및 시행령 검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결정과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를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는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심의(제5조), △사회적기업 인증 심의(제7조제2항), △사회적기업 활동실태 조사 결과의 통보(제6조) 등 사회적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핵심 심의 기능을 수행함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르면,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중앙 심의기구로서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더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로 지역고용 심의회가 설치되어 지역 고용정책과 사업을 협의·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심의 기능을 고용정책 심의회에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을 뿐,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표 4-30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제6조·제7조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 「협동조합 기본법」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의2는 협동조합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위원회는 협동조합 정책의 방향성과 제도 운영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로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설립·합병·분할 관련 사항, △관리·감독 및 관계 기관 간 협의·조정, △협동조합 관련 법·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사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함
- 한편, 법률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하는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표 4-31】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의2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관리·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비롯하여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도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계획 수립, 급여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결정, 자활기금 운영지침 수립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함
- 한편, 제20조제1항 단서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존재하고 해당 위원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한정된 예외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표 4-3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4.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6.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이내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명 이내

④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⑤ 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7호, 2025. 3. 18., 타법개정]

- 유사 법률들을 검토한 결과, 중앙부처에 설치된 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로 대체하도록 규정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 대부분의 법률은 해당 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기능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유한 중앙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으며, 타 위원회로의 대체 규정은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2)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방향

- 행정안전부가 중앙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부내 정책자문위원회를 대체 기구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대신해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규정을 마련함

5.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제6호)

1) 현행 제도 및 의견 검토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검토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6호는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열거하면서, 그 외에 마을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추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시행지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마을기업의 최종 심사 및 지정, 마을기업 연합사업의 최종 선정, 우수사례(우수마을기업, 모두애 마을기업 등) 심사·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기능은 이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음
 - 즉, 법률상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는 △마을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마을기업의 지정 및 평가, △포상 등 마을기업 정책 전반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행지침상 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실질적 기능을 포괄함

【 표 4-33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9조(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마을기업의 사업에 관한 평가
3.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마을기업 포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5.] [법률 제21017호, 2025. 8. 14., 제정]

(2) 유사 법률 및 시행령 검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와 제7조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사회적기업 인증 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표 4-34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제7조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 「협동조합 기본법」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의2에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추가로 필요한 심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표 4-35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의2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관리·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추가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은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 관련 법·제도 개선,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교육 및 홍보계획의 수립,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심의회가 협동조합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 및 확산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표 4-36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6. 7.] [대통령령 제33498호, 2023. 6. 7.,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을 통해 추가적인 심의 대상을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음
- 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법률이 직접 한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적 자의성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표 4-3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4.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6.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7호, 2025. 3. 18., 타법개정]

2)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방향

-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이미 모두 열거되어 있음
- ‘그 밖에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추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중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3항)

1) 현행 제도 및 의견 검토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검토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서는 중앙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시행지침(18쪽)에는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 방식, 위원의 자격 기준, 임기, 운영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유사 법률 및 시행령 검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심의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가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고용정책심의회는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기구이므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아닌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표 4-38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제6조·제7조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 「협동조합 기본법」

-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의2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은 심의회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회의 개최 주기(분기별 1회 원칙), 개의 및 의결 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외부 전문가의 발언 참여 허용, 그리고 안전 검토·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표 4-39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의2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표 4-40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조의3(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6. 7.] [대통령령 제33498호, 2023. 6. 7.,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고 명시하고, 동 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할 사항과 구성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모두 규율하고 있으며,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 위임의 근거를 둔 대상은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에 한정되고 있음
- 즉,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별도의 대통령령 위임 없이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며, 구성·기능·심의 사항 등이 법률에 직접 규정된 구조를 취하고 있음

【 표 4-4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이내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명 이내

④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7호, 2025. 3. 18., 타법개정]

- 유사 법률의 중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법률이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위원 수, 위원장 및 위원 구성, 회의 개최 주기, 개의 및 의결 정족수 등 운영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일부 법률은 실무위원회 설치나 외부 전문가의 발언 참여 근거까지 포함하고 있음

2)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방향

- 중앙위원회를 대체하여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중앙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 해당 조문은 마련하지 않기로 함

7. 시·도위원회 대체 규정에 관한 사항(법 제10조제1항)

1) 현행 제도 및 의견 검토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검토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은 시·도에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을 경우 해당 조직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행지침(22쪽)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지정·재지정·고도화 심사 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마을기업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사업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부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이 심사위원회는 법률상 설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임시적 조직으로, 법률 시행 이전까지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자체 구성한 심사위원회가 사실상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각 시·도의 위원회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현장에서 이미 작동 중인 구조와 역할을 반영한 시행령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유사 법률 및 시행령 검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관련한 기본계획의 수립, 사회적기업 인증 심의 등 주요 정책 사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가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용노동부 소속의 중앙 단위 심의기구인 ‘고용정책 심의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지역 고용심의회’로 구분된 이원적 체계를 갖추고 있음
- 특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단위의 노사민정 협의체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존재할 경우 별도의 시·도위원회를 중복 설치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음

| 표 4-42 |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출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5호, 2024. 1. 9., 일부개정]

□ 「협동조합 기본법」

-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 단위의 심의기구만을 설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도 단위의 지역위원회 설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이를 대체하거나 준용할 수 있는 시·도위원회 대체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음

【 표 4-43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의2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관리·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이미 존재하고 해당 위원회의 구성이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시·도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생활보장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음
- 즉, 법적 대체 가능성을 열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사업의 특성상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보장위원회를 고유한 심의기구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4-4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제4항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7호, 2025. 3. 18., 타법개정]

- 유사 법률을 검토한 결과, 시·도 단위 위원회의 대체 규정은 일부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운영 형태는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이미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존재할 경우에 한해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대체 운영 사례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법률은 시·도 단위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2)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방향

-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또는 지속가능경제 조례에 근거하여 이미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들 위원회가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시·도 차원에서 마을기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사회적경제 전반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8. 시·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법 제10조제2항)

1) 현행 제도 및 의견 검토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검토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은 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지침(22쪽)에 따르면, 마을기업 지정 요건 심사 시 7인 이상의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이 중 민간위원이 50% 이상 참여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이 외에 시·도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이나 운영 절차 등에 세부 사항은 시행지침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유사 법률 및 시행령 검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 관련 주요 정책 사안인 기본계획의 수립, 사회적기업 인증 심의 등의 기능을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용노동부 소속의 중앙 단위 심의기구인 고용정책 심의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지역고용 심의회로 이원적 체계를 두고 있음

【 표 4-45 】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5호, 2024. 1. 9., 일부개정]

- 특히 시·도에 설치되는 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절차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20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해당 시행령은 위원회 구성 요건(위원 수 및 자격), 회의 운영방식, 전문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사·연구위원 위촉 절차, 운영세칙의 제정 권한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표 4-46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0조

제13조(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이하 “지역고용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청장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 관할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 가.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나. 고용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지역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 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1. 고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2. 고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③ 제1항의 전문위원회는 지역고용심의회가 전문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을 연구하거나 심의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고용심의회) ① 지역고용심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그 밖에 지역고용심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1.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속하는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
2. 지역고용심의회 위원장이 속하는 시·도의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

④ 실무위원회에 지역의 인력 수급 상황 등을 조사·연구할 5명 이내의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8조(지역고용심의회 운영세칙)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고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시·군·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은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지역고용심의회 위원장이 정한 운영세칙에 따라 시·군·구 고용심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군·구 고용심의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0조(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군·구 고용심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5. 10. 1., 타법개정]

□ 「협동조합 기본법」

○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 단위의 심의기구만을 설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도 단위의 지역위원회 설치 근거가 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 또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은 시·도 및 시·군·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표 4-4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7호, 2025. 3. 18.,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체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제28조에서 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 15명 이내) 및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정하고 있으며, 제29조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제30조와 제30조의2에서는 위원의 임기, 직무,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에서는 회의 운영 절차, 의견청취권, 간사 지정, 수당·여비 지급, 운영규정 제정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표 4-4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제35조

제28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① 시·도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 3.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군·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 5.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6.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 8.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0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의2(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및 이 영 제27조의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1조(회의 및 의사)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의견의 청취)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간사)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수당과 여비)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운영 규정)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각 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 유사 법률 검토 결과,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시·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위원 수와 자격, 임기, 회의 운영 절차, 소위원회 설치, 간사 지정, 수당 지급 등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시·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마을기업 컨설팅·교육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2)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방향

- 시·도위원회 위원 수, 위원장 지위, 위원 자격 요건(마을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임직원, 마을기업 대표자, 당연직 위원 등), 심의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함
 - 특히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령에 ‘마을기업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 구성 요건으로 포함함
- 이외의 세부적인 구성·운영 기준은 시·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구조로 설계함

9. 마을기업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법 제11조제1항제2호·제5호)

1) 현행 제도 및 의견 검토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검토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제5호는 마을기업 지정 요건과 관련하여 출자자 수, 출자 비율, 특수관계인 간 출자 비율 등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항에 열거된 사항 외의 추가 요건 역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먼저, 회원 구성과 지역성 요건에 대해 시행지침 4쪽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시행지침 4쪽)
- 또한 지역의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도 제시하고 있음
 -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단, ‘인구감소지역’은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시행지침 4쪽)

- 이어 법인 형태 및 기업성 요건에 관해 5쪽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으로 여건에 맞는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시행지침 5쪽)
-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에 실제 출자해야 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출자 구조의 균등성을 강조하고 있음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시행지침 6쪽)
 -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시행지침 6쪽)으로 정의됨
- 또한 심사 절차와 평가 기준은 25쪽 이하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는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가점 항목 등으로 구성된 지표를 통해 심사위원회가 평가하며, 심사위원 평균점수 80점 미만은 탈락시키고 우선순위를 부여함
 - 이후, 광역자치단체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서류심사함

(2) 유사 법률 및 시행령 검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을 법 제8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법률은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수익구조, 이해관계자 참여, 이윤의 사회적 환원 등 사회적기업의 본질적 요소를 중심으로 요건을 규정하면서, 실질적인 판단기준과 세부 유형은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보완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표 4-49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춘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춘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춘 것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구체화하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직 유형을 사회적기업 인증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표 4-50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 「협동조합 기본법」

-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정’이나 ‘인증’ 방식이 아닌 신고제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달리 행정기관의 심사·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특징임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는 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다만, 법은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설립 요건이나 심사 기준을 두지 않고 있으며, 대신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협동조합의 법인격과 주소, 설립 목적, 기본원칙, 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협동조합이 가져야 할 기본적 성격과 공익적 운영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표 4-51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표 4-52 |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7조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 연합회(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3. 31.>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조합원등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제2항은 자활기업의 설립 및 운영 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법은 자활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형태를 갖출 것,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2인 이상이 구성원으로 포함될 것,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표 4-5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춘 것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춘 것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삭제 <2021. 7. 27.>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7호, 2025. 3. 18., 타법개정]

(3)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기존 지침에서 인정되던 일정한 융통성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여 출자금 균등 노력 원칙을 조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2)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방향

- 출자요건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는 출자자 수, 출자비율, 특수관계인 간 출자 제한 기준을 규정함
- 시·군·구 단위로 마을주민 범위를 확대 적용할 경우 필요한 마을기업 지정 요건도 규정함

-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특수관계인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로 축소하고, 최대 출자자 지분 30% 이하,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 합산 50% 이하 등 출자금 균등 노력 원칙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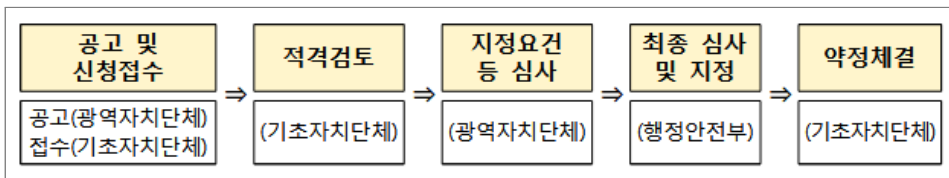
10. 마을기업 지정 절차·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법 제11조제2항)

1) 현행 제도 및 의견 검토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검토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은 마을기업 지정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행지침에서 마을기업 지정 절차, 내용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마을기업(1~3회차) 지정은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지정요건을 충족한 1~3회차 (신규·재지정·고도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됨
- 절차는 공고 및 신청 접수 → 적격검토 → 지정요건 등 심사 → 최종 심사 및 지정 → 약정체결의 순으로 진행됨(시행지침 15쪽)
- 각 단계의 주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시행지침 15쪽)
 - 광역자치단체가 공고를 실시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신청을 접수함
 - 이후 적격검토는 기초자치단체, 지정요건 등 심사는 광역자치단체, 최종 심사 및 지정은 행정안전부, 약정체결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함

| 그림 3-1 | 마을기업 지정 절차



출처: 행정안전부(2024) 15쪽

- 또한 시행지침 23~26쪽에서는 마을기업(1~3회차) 지정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1회차(신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항목을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가점 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별로 배점을 부여함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가점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이 설정되어 있음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실적 포함),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가점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이 설정되어 있음

(2) 유사 법률 및 시행령 검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절차와 방법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지 않고, 제8조제3항을 통해 이를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음

【 표 4-54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3항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심사기관의 역할 등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직 형태, 유급근로자 명부,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 수입기준 충족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진흥원장은 이를 검토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음

【표 4-55】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인증 신청)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 한다)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나.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다.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라.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 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마. 영 제9조제2항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0조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7.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이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 [고용노동부령 제269호, 2019. 12. 20., 일부개정]

□ 「협동조합 기본법」

-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정’이나 ‘인증’과 같은 행정 인가 방식이 아닌 ‘신고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절차적 근거를 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해야 함
 - 또한,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됨

【 표 4-56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등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설립신고의 구체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표 4-57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7조(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6. 7.] [대통령령 제33498호, 2023. 6. 7., 일부개정]

- 이어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첨부해야 할 구비서류를 세부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관 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 명부, 사업계획서, 예산서, 출자좌수 명부 등 협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핵심 서류가 포함됨

| 표 4-58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7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71조제4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제2항은 자활기업이 설립·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법률은 ‘인정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표 4-59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제2항

제18조(자활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7호, 2025. 3. 18., 타법개정]

- 유사 법률 검토 결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은 인증 절차를 구체화하여 신청서 접수처, 제출 서류, 보완 요구 권한, 검토 결과 통보 의무 등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방향

- 마을기업 지정 절차에 관한 조문은 신청, 검토, 심사, 지정, 통보에 이르는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함
- 시·도지사의 공고 의무,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서 접수 및 요건 검토, 시·도지사의 심사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제출, 장관의 최종 지정 결정 및 통보 등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구분되도록 절차를 규정함

11.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법 제12조제1항제5호)

1) 현행 제도 및 의견 검토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검토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특히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지원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교육훈련, 시설비·부지구입비 등 지원·용자,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등이 열거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시행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기업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시행지침 33~34쪽에서는 마을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교육 유형을 구분하고 있음
- 1회차 마을기업을 대상으로는 신규 교육, 2·3회차 및 우수·모두애(愛)·연합체 마을기업을 대상으로는 전문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지침 33~34쪽)
 - 신규 교육에서는 보조금 사용 주의사항,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마을자원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공동체 관리, 민주적 법인운영 방안, 마케팅 및 판로 전략, 우수사례 공유·견학, 마을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선배 마을기업과의 교류·소통, 경영관리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짐
 - 전문 교육에서는 기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브랜드 관리·서비스·기획·개발 등 심화교육과 더불어, 마을기업 및 보조금 제도 주요 변경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보조금 사용 주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룸
- 다음으로, 재정 지원에 관하여 시행지침 37쪽은 기초자치단체가 마을기업과 약정을 체결한 후 교부신청서 등을 접수하여 보조금 교부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마을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 일부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임
- 시행지침 38~39쪽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비 편성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건설비(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할 수 있음
 - 인건비는 등기임원을 제외한 마을기업 회원을 고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운영비는 안내 및 홍보물 제작비, 전문가 활용비, 임차료, 재료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그림 3-2 | 마을기업 대상 권장 교육내용

구분 (교육시간)	이수인원	교육시기	교육내용(안)
① 신규 교육(17시간)			
입문 (7시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광역 심사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사용 주의사항 ▶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 마을자원 발굴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기초 (7시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관리, 민주적 법인운영 방안 ▶ 마케팅 및 판로 등 ▶ 우수사례 공유·견학 ▶ 마을기업간 네트워크 ▶ 선배마을기업과의 교류·소통
심화 (3시간)	회원 7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관리(재무·회계·인사·성과관리 등) *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 보조금 사용 주의사항
② 전문 교육(6시간)			
기본 (4시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광역 심사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전문성 강화 교육(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기획, 개발 등) ▶ 마을기업·보조금 제도 등 주요 변경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심화 (2시간)	회원 3인 이상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필참)	지정 후 ~ 보조금 교부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사용 주의사항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실무가이드 라인 (24.3월, 행정안전부) 사례 참조

출처: 행정안전부(2024) 34쪽

(2) 유사 법률 및 시행령 검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이 조항들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기술 자문(제10조), 교육훈련 지원(제10조의2), 시설비 및 자금지원(제11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12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제13조), 재정지원(제14조)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이 법은 사회적기업 지원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이외에 사회적기업의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추가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표 4-6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16조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 「협동조합 기본법」

- 「협동조합 기본법」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3까지에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 자문 및 정보 제공(제10조의2), 전문인력 양성과 조합원 교육훈련 실시(제10조의3)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11조에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협동조합의 자율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기본계획의 내용과 관계 기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명문화하고 있음
- 다만, 법률은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음

| 표 4-61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2~제11조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와의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제3항은 보장기관이 자활기업에 대해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지원 항목을 열거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주요 지원 내용에는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의 우선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우선 위탁, △경영·세무 등 운영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다만, 동 조항은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구조는 아니며, 법률 자체에서 제6호를 통해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이라고 명시하여 포괄적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음

【 표 4-6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제3항

제18조(자활기업)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삭제 <2021. 7. 27.>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7호, 2025. 3. 18., 타법개정]

(3)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마을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공비, 시험·인증 비용, 각종 허가 등록을 위한 전문가 활용비 등을 지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2)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방향

- 기존 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 항목을 기본으로 하되,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시험·인증 및 허가 절차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비를 새로운 지원 항목으로 추가함

12. 마을기업 우대 기준에 관한 사항(법 제12조제3항)

1) 현행 제도 및 의견 검토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검토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서는 청년 구성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즉, 청년 비율이 어느 수준 이상일 때 우대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시행지침은 청년마을기업 우대 기준과 지정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 시행지침 12쪽에서는 “지역주민 5인 이상 포함하고, 지역주민비율(50% 이상)과 청년회원비율(30~5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과 같이 규정함
 - 청년은 「청년기본법」 청년 정의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에 따를 수 있음
- 또한 13쪽에서는 청년회원비율을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 청년인구비율이 15% 미만인 경우, 청년회원비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 청년인구비율이 15% 이상 20% 이하인 경우, 청년회원비율은 40% 이상이어야 함
 - 청년인구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청년회원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그림 3-3 | 기초자치단체 청년인구비율에 따른 청년회원비율 기준

<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른 청년회원비율 기준 >

√ 총 인구의 청년인구비율(20%) 초과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청년회원비율 50% 적용, 미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인구비율별 차등 완화

기초자치단체 청년인구비율*	15% 미만	15%~20% 이하	20% 초과
청년회원비율	30%	40%	50%

* 산정 기준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말일(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jumin.mois.go.kr 참고)
예) '25년 신청 시, '24.12.31. 기준 적용

출처: 행정안전부(2024) 13쪽

- 이때 청년인구비율 산정 기준은 신청연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하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jumin.mois.go.kr)를 참고하도록 함
- 또한, 청년마을기업으로 2·3회차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청년 마을기업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지역주민비율과 청년회원비율에 대한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2) 유사 법률 및 시행령 검토

-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정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우대하거나 차별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없음

2)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방향

- 시행지침에 규정된 청년 마을기업 우대 기준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조문화함

13. 마을기업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법 제13조제3항)

1) 현행 제도 및 의견 검토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검토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은 마을기업 지정 취소의 절차와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시행지침 54쪽에서는 마을기업 지정 취소 절차를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음
- 먼저,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면(예: 마을기업이 스스로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는 즉시 현장실사를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마을기업 지원기관과 협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함
- 이후 기초자치단체는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약정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상의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음
- 약정 해지 결정은 문서로 마을기업에 통지하며, 해당 문서가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함
- 약정이 해지되면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지정 취소를 요청함
 - 이때 지정 취소 사유와 함께 중요 자산 처리 등 후속조치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검토 후 지정취소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함

| 그림 3-4 | 마을기업 지정 취소 절차

- ①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예: 지정 취소 신청서 제출)
- ②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즉시 현장 실사(필요할 경우 마을기업 지원기관 협조)
- ③ 기초자치단체는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약정해지 여부 결정
 -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기초자치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2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의 소견을 첨부하여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 (구성) 5인 이상의 민관위원 / 위원장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 기초자치단체는 약정해지 결정을 마을기업에 통지(문서가 마을기업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
- ④ 기초자치단체는 약정해지 후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지정 취소 요청
 -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 취소 사유와 중요재산 처리 등 후속조치 계획 제출
 - 광역자치단체는 지체없이 지정 취소 검토보고서(p132)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 ⑤ 행정안전부는 지정 취소 사유와 후속조치 계획이 타당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지정 취소 결정 통지
- ⑥ 해당 마을기업은 지정 취소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른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마을기업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함
- ⑦ 기초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후속조치 계획에 따라 처리
 - 마을기업에게 고의·과실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및 지급 물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보조금 잔액과 그 이자를 반납 받아 분담률에 따라 세외수입에 납입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조금으로 구입한 중요재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⑧ 자치단체는 후속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관리대상 통계에서 제외
 - 지정 취소된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정책 대상에서 제외

출처: 행정안전부(2024) 54쪽

- 행정안전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지정취소 사유와 후속조치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지정취소 결정을 통보함
- 마을기업은 지정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마을기업 지정서를 반납해야 함
- 이후 기초자치단체는 관련 법령 및 후속조치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하거나 회수함
 -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과 지급 물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잔액과 이자를 반납받아 세외수입으로 납입함
 - 필요할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자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마지막으로 자치단체는 후속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지정이 취소된 마을기업을 관리대상 통계에서 제외함

(2) 유사 법률 및 시행령 검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취소 사유 및 절차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조 제1항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요건을 상실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한 경우 등을 인증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 특히 제1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18조제4항에서는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과 세부 절차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표 4-6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인증취소 절차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였음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청문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출석 요구서를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정 조정이 가능함
- 또한, 인증취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 및 관계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진흥원)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4-6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인증취소의 세부 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진흥원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 [고용노동부령 제269호, 2019. 12. 20., 일부개정]

□ 「협동조합 기본법」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지정취소’나 ‘인증취소’와 같은 행정적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조합 자체의 의사나 법률상 사유에 따라 해산 절차를 통해 종료됨
 - 즉, 협동조합은 국가나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지위를 박탈하는 형태가 아니라, 조합 내부의 결정이나 법적 사유에 의해 해산이 이루어짐
- 법 제57조는 협동조합의 해산 사유와 절차의 기본틀만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합병·분할 또는 파산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하게 됨
 - 해산이 결정된 경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취임 후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신고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표 4-65 |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이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는 해산신고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음
 -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또는 정관상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 또한,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표 4-66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① 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는 자활기업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 제1항은 자활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요건을 상실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자진하여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또는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인정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 이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법 조항은 인정취소의 구체적 사유와 기준을 제시할 뿐, 취소 절차나 청문 등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표 4-6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①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 악화 등으로 자진하여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보장기관은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의 이유로 인정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3)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지정 취소 절차에 자진 신청을 포함하여 기업이 스스로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히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음
- 또한, 지정 취소 검토 후 결정까지의 처리 기한을 30일 이내로 명시하고, 지정 취소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동일 시·군 내 마을기업, 이어서 광역 및 전국 단위로 순차적으로 이관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공매 처리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음

2)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방향

- 마을기업 지정취소 절차는 시행지침 내용을 기반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시행령에 조문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함
- 이해관계자 의견 중 지정취소 처리 기한을 30일로 명시하자는 제안은 행정 안전부의 수용이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어 시행령 반영 대상에서 제외함
- 반면, 지정취소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동일 시·군 내 마을기업부터 광역·전국 단위 순으로 이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관처가 없을 경우 공매로 처분하도록 하는 절차는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어 반영함

14. 마을기업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법 제14조제1항)

1) 현행 제도 및 의견 검토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검토

- 시행지침에는 마을기업의 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유사 법률 및 시행령 검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2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법정 지정과 그 취지를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정하고, 이 날부터 1주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표 4-6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2

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 ①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 「협동조합 기본법」

- 「협동조합 기본법」 제12조는 ‘협동조합의 날’의 법정 지정과 그 취지를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에 따르면,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협동조합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이 날 이전 1주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표 4-69 | 「협동조합 기본법」 제12조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자활기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법정 기념일(‘자활기업의 날’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방향

- ‘마을기업의 날’은 향후 행정안전부의 대국민 공모를 통해 결정하고, 공모를 통해 확정된 날짜를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함

15.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자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법 제15조제3항)

1) 현행 제도 및 의견 검토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검토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서는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자료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법률에서 규정한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현재 행정안전부가 구축 중인 마을기업 DB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면, 시행지침 55쪽의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시행지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DB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시스템이 완성된 이후에는 실태조사 시 마을기업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마을기업 현황, 사업성과, 지역공헌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를 직접 작성·제출하도록 할 예정임

(2) 유사 법률 및 시행령 검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제4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주요 업무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명시하고 있음
- 다만, 동 법률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절차나 자료 제공 요청, 정보관리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음

【표 4-7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제4항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 「협동조합 기본법」

- 협동조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자활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개별 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제18조의10에서 자활지원사업 전반을 관리·분석하기 위한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 및 효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관리하기 위해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관련 자료를 조사·활용할 수 있으며,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자활복지개발원 등은 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음
 - 아울러 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업무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에 따른 수수료나 사용료는 면제됨
- 그러나, 법에서는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음

【 표 4-7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10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관리하는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업자등록부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소득정보, 가입종별, 부과액 및 수급액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4.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장과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방향

- 행정안전부가 현재 ‘마을기업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마을기업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리함
- 이 시스템은 정보화마을 사업 홈페이지를 개편해 구축 중이며, 마을기업이 직접 매출, 사회적 공헌 활동, 종사자 수 등 주요 정보를 입력하고, 지자체, 행안부가 각각의 권한 범위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관리·활용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정책과 시책을 안내할 예정임
- 이러한 운영 목적과 기능을 시행령에 반영해 정보 입력 항목, 활용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6. 마을기업지원기관 설치·지정·운영에 관한 사항(법 제16조제5항)

1) 현행 제도 및 의견 검토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검토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시·도 마을기업지원기관의 설치·지정 및 그 수행 업무, 그리고 시·도지사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이와 관련된 지원기관의 설치·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시행지침 8쪽에서는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 시행지침에 따르면, 마을기업 지원기관은 마을기업 발굴 및 심사 지원, 판로 확대 및 유관 정책사업 안내 지원, 마을기업 교육 및 컨설팅, 실태조사와 현장점검 등 마을기업 관리 지원, 마을기업 간 상호교류와 협업과제 발굴 등 네트워크 구축·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지원기관의 구체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광역자치단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선정·운영·관리는 광역자치단체가 관련 법령, 공고,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한다”(시행지침 8쪽)

(2) 유사 법률 및 시행령 검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전담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치하며, 진흥원은 법인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지원·평가·교육·정보체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특히 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모델 개발, 경영·기술·세무·노무 등의 컨설팅,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중앙 단위의 종합적 지원 역할을 담당함
- 반면, 법률에서는 시·도지사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별도로 ‘시·도 단위 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음

| 표 4-72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

-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⑧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⑨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감독하며,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⑪ 진흥원의 정관, 이사회·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⑫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 「협동조합 기본법」

- 법률에 협동조합 지원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전문 기관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서, 자활사업의 기획·지원·관리 및 정책 연구 등 자활기업을 포함한 자활지원체계 전반을 총괄하는 중앙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 표 4-7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을 지도·감독하며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자활복지개발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법 제15조의2제5항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등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6까지에서 해당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목적, 조직, 사업범위, 회계 등), △이사회의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 △회계연도의 기준 등을 명시하여 기관의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음

| 표 4-7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4~제21조의6

제21조의4(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 4. 임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
- 5. 이사회의 운영
-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 7. 회계
- 8. 정관의 변경
- 9.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제21조의5(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회) ① 자활복지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2. 주요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3. 임원 및 직원의 임면
 4. 정관의 변경
 5.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 운영에 관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원장을 제외한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의6(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 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시·도지사가 자활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별도의 지역 단위 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 즉, 자활기업 지원체계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운영 구조가 아니라, 보건 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형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다만, 법 제15조의10 및 제16조에 따라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 센터를 지정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광역자활센터는 시·도 단위에서 자활기업 창업지원, 자활센터 종사자 교육,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함
 - 지역자활센터는 자활 교육, 직업훈련, 창업지원, 자활기업 운영지원 등 현장 밀착형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기능함
- 이러한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는 보장기관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은 아님

표 4-7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제16조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시·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방향

- 마을기업지원기관의 설치·지정·운영과 관련하여, 계약 방식은 위탁 방식으로 정하고, 그 밖의 세부 운영 기준은 시·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

17.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1항)

1) 현행 제도 및 의견 검토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검토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시행지침 8쪽에서는 기관별 역할을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먼저 광역자치단체는 마을기업 모집공고, 광역자치단체 심사 및 추천, 예비마을기업 지정 및 지정취소, 지원금 지급 등 운영·관리 일체, 소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및 관리,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관리 역할을 수행함
 - 기초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지정 신청 접수 및 현장실사, 적격 여부 검토, 약정 체결, 소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및 관리, 실태조사와 현장점검 등 마을기업 관리, 사업비 집행 사전 검토·승인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유사 법률 및 시행령 검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표 4-76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제1항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법 제21조의 위임 근거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는지를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제14조), △사업보고서의 접수 및 시정명령 등 감독 업무(제17조), △인증취소 및 청문 절차(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제23조)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함

| 표 4-77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의 명령, 시정명령
3.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청문
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 「협동조합 기본법」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현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시행령에는 제116조제1항에서 위임 근거로 언급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구체적인 권한의 범위나 내용’을 규정한 조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표 4-78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 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2)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방향

- 권한 위임 규정은 법률이 정한 기본 틀을 따르면서 그동안 시행지침에서 운영해 온 역할 분담 방식을 조문화하는 데 중점을 둠
- 우선, 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공고·심사·추천, 마을기업 보조금 운영·관리, 마을기업지원기관 지정·설치·관리, 지정취소 청문, 감독 등 기능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광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또한, 마을기업 지정신청 접수와 마을기업 요건 적격성 검토와 같이 기초 행정과 밀접한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맡겨, 주민과 가까운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구분함

18. 위탁 기관·법인·단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2항)

1) 현행 제도 및 의견 검토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검토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 실태조사, 마을기업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과 기능을 갖춘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시행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실태조사, 마을기업 지원 업무는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하고 관리하는 ‘마을기업 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즉, 실제 위탁 대상 기관은 시·도별로 지정된 지원기관이 됨
- 또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이미 마을기업지원기관의 설치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통령령 위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2) 유사 법률 및 시행령 검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장관은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제6조),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제7조제1항), △정관 변경 보고서의 수리(제9조제2항), △교육훈련의 실시(제10조의2) 등을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같은 법 제20조에서 이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1조에서 언급한 위탁은 진흥원을 특정 대상으로 한 위탁 구조로 이해됨
- 이에 따라, 이러한 위탁이 어떤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단체에 가능하며, 위탁 절차나 조건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음

| 표 4-79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제1항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4.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 「협동조합 기본법」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제3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법률에 따른 일부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표 4-80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제3항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이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위임 근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구체적 업무를 열거하고 있음
 - 위탁 대상 업무에는 △교류·협력 사업(법 제10조제4항), △경영지원(법 제10조의2), △교육훈련 지원(법 제10조의3),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확인 및 보완 요구(법 제49조의2 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의 확인 및 보완 요구(법 제85조 등) 등이 포함됨
- 다만, 법률과 시행령 모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특정 기관에 위탁 대상을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탁이 어떤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단체에 가능하며, 위탁 절차나 조건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일반적 기준이나 세부 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표 4-81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제32조(권한의 위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 제3항 및 제115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영공시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 6의2. 법 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 6의3. 법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설립신고 및 해산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 7의2.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 7의3.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 7의4.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8.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필요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9.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10. 법 제115조의3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6. 7.] [대통령령 제33498호, 2023. 6. 7.,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기관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자활복지개발원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요건 (정관, 이사회, 회계 등)을 갖추어야 함

표 4-8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제15조의3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을 지도·감독하며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자활복지개발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자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개발 및 평가
2.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3.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4.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5. 자활 관련 기관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6.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제18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자활복지개발원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자활복지개발원에 한국자활연수원을 둔다.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한편, 법 제15조의10과 제16조에서는 각각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및 주요 업무를 열거하고 있음

- 보장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기관)은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 센터를 지정할 때,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과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수행능력’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세부 요건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과 집행은 행정적 재량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표 4-8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제1항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시·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표 4-8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방향

- 현 단계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외에 추가로 위탁할 만한 업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에 관한 별도 조문은 두지 않는 것으로 정리함

19.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2항제3호)

1) 현행 제도 및 의견 검토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검토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3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업무를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때, 실태조사나 마을기업 지원 업무 외에도 필요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추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16조에서 위탁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지원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 조문에서 이미 지원기관이 수행해야 할 7개 주요 업무를 열거하고 있음
- 이들 업무 내용은 시행지침에 규정된 마을기업지원기관의 역할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별도의 추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임
- 따라서 향후 새로운 업무가 필요해지는 경우에는, 그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2) 유사 법률 및 시행령 검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전담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 제4항에서는 진흥원이 수행해야 할 주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과 평가,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컨설팅 및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사회적기업 지원 전반에 관한 기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법률은 제20조제4항에서 이미 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를 추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음

표 4-85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제4항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 「협동조합 기본법」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은 법 제116조제3항의 위임 근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구체적 업무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위탁 대상 업무에는 △교류·협력 사업(법 제10조제4항), △경영지원(법 제10조의2), △교육훈련 지원(법 제10조의3),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확인 및 보완 요구(법 제49조의2 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의 확인 및 보완 요구(법 제85조 등) 등이 포함됨
- 이처럼 시행령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진흥원에 위탁되는 특정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외의 협동조합 지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업무를 하위법령을 통해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표 4-86】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제32조(권한의 위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 제3항 및 제115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영공시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 6의2. 법 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 6의3. 법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설립신고 및 해산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 7의2.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 7의3.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 7의4.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8.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필요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9.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10. 법 제115조의3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6. 7.] [대통령령 제33498호, 2023. 6. 7.,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면서, 자활복지개발원이 수행해야 할 사업을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음
- 이 가운데 제10호에서는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명시하여, 법률상 나열된 업무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다만, 이러한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복지개발원이 수행할 추가 사업을 구체화한 행정규칙은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은 상태임

【표 4-8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제1항

<p>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자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개발 및 평가 2.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3.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4.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5. 자활 관련 기관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6.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제18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한편, 광역자활센터(제15조의10제1항) 역시 수행해야 할 사업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 호에서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명시하여 추가 사업 지정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음

○ 그러나 이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은 제정되지 않아 실질적 운용 사례는 없는 상황임

| 표 4-8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제1항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시·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2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이에 비해 지역자활센터(제16조제1항)는 마지막 호에서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별도 사업 지정 권한을 전제하지 않고 있음

| 표 4-89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방향

-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마을기업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함
- 또한, 이러한 업무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 범위를 고시하도록 규정함

20.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법 제22조제3항)

1) 현행 제도 및 의견 검토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검토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그러나, 시행지침에는 동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유사 법률 및 시행령 검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법 제23조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무단 명칭 사용, △정관 변경 미보고, △사업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작성 등의 경우에 1천만 원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23조제3항에서는 이러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표 4-90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0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법 제23조제3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있음

| 표 4-91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 「협동조합 기본법」

○ 「협동조합 기본법」은 법 제119조에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 대상은 △명칭 사용 제한 위반, △출자좌수 제한 초과, △조합원 의결권 차등 부여, △사업 이용 제한 위반, △감독기관의 검사 거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음
- 위반의 유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 조 제4항에서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주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음

| 표 4-92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협동조합등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등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자
 3.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협동조합연합회등
-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76조·제91조·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2조의2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출자의 총액 한도를 초과하게 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4.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5.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 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 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이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법 제1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명시하고 있음

| 표 4-93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6. 7.] [대통령령 제33498호, 2023. 6. 7.,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제50조의2에서 자활기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업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작성, △보고나 서류 제출 의무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자활기업과 유사한 명칭의 무단 사용 등으로 명시되어 있음
 - 이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수행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표 4-9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0조의2

제5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한 자
 3.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부과·징수한다.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법 제50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음

| 표 4-9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2)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방향

- 유사 법률 사례와 동일하게 별표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기간에 따른 차등 부과 기준과 감경 사유를 함께 명시하여 마을기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함

제 5 장

시행령 제정과 향후 정책과제

제1절 시행령 제정안

제2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과제

제1절

시행령 제정안

1. 법률 및 시행령 위임 체계

○ 법률 및 시행령 위임 체계는 다음 표와 같음

[표 5-1 | 법률 및 시행령 위임 체계

법률	시행령(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마을주민”이란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조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3조
제8조(실태조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4조
제9조(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 ①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안 제5조
제9조(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 ③ 제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안 제6조
제10조(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 내 마을기업의 지원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시·도에 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안 제7조

법률	시행령(안)
제11조(마을기업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수·출자비율·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을 충족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안 제8조
제11조(마을기업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 절차·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9조
제12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그 밖에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 제10조
제12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안 제11조
제13조(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③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2조
제14조(마을기업의 날) ① 국가는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마을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마을기업의 날로 하고, 마을기업의 날부터 1주일을 마을기업 주간으로 한다.	안 제13조
제15조(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자료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4조
제16조(마을기업지원기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설치·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5조
제2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안 제16조
제2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안 제17조
제2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22조(과태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안 제18조

출처: 연구진 작성

2. 시행령 제정안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전문은 다음과 같음

【표 5-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전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주민의 기준) ①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을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읍·면·동의 구역 안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읍·면·동의 구역 안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나 주민의 생활권 등으로 인하여 활동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지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1.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 ② 기본계획은 각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모든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 일반현황(기업명, 위치, 회원 수, 연락처 등)
2. 사업성과(매출, 고용 등)
3. 공헌활동 실적
4. 물품대장 확인 및 관리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마을기업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5조(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는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제6조(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 지사가 위촉하거나 지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마을기업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임직원
3. 마을기업을 대표하는 사람
4. 시·도 조례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③ 시·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 지정요건 심사
2. 그 밖에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4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7조(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조직의 요건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2호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추구하는 경제이념을 말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임직원,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2. 관계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조직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마을기업의 지정 요건)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자자수·출자비율·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기업의 회원은 5인 이상의 마을주민을 포함하여야 하고, 마을주민이 전체 회원의 100분의 7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 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마을주민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일반 지역: 마을주민이 전체 회원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마을주민이 전체 회원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2. 마을기업의 회원은 마을기업에 출자한 사람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3.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는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제3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성(마을주민의 참여 및 의사결정 구조, 주민 공동이익 환원 등)
2. 공공성(지역사회 기여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
3. 지역성(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경제 기여 등)
4. 기업성(영업활동의 실현 가능성, 수익구조 및 지속가능성 등)
5. 사업계획의 적정성(목표, 추진전략, 자원계획 및 운영역량의 타당성 등)

제9조(마을기업의 지정 절차·내용 등) ①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기준점수, 가점사항, 심사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마을기업 지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지사는 매년 마을기업 지정과 관련된 신청 자격, 방법, 기간, 구비서류 등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서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마을기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1호의 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등은 제2호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서류의 적정성 및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제3호에 따라 송부받은 신청서류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마을기업 지정요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호에 따라 제출받은 추천대상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중앙위원회는 제5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신청 법인의 대표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법인, 시·도지사, 시장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8.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호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마을기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정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관할 시장등을 통하여 해당 법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0.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은 지정 사실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기임원을 제외한 마을기업 회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인건비
2. 안내서·홍보물 등 제작비
3. 사무공간 등의 임차료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료비, 가공비 및 소모품비
5. 각종 시험, 인증 및 허가를 위한 전문가 활용비

제11조(청년 구성비율의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청년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마을기업의 전체 회원 중 마을주민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1. 마을기업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이하 “해당 기초자치단체”라한다)의 청년인구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전체 회원 중 청년회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전체 회원 중 청년회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3.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회원 중 청년회원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인구비율은 신청연도 직전년도말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③ 청년회원이라 함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④ 공고일 기준 제1항의 청년회원 비율과 마을주민 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12조(마을기업 지정취소의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해당 마을기업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의 시장등에게 지정취소 사유에 관한 사실조사 및 검토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마을기업이 스스로 사업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은 그 사유를 확인하고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현장실사 또는 관계인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마을기업 지원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 및 취소 사유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 및 자료와 스스로 실시한 사실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지정취소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후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청문 절차, 청문 주재자의 선정·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 ⑥ 시장등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마을기업에 지정취소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 해당 문서가 마을기업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⑦ 지정이 취소된 마을기업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시장등은 제7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보조금 정산·회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의 처분은 동일 관할 시·군·구의 다른 마을기업이 해당 자산을 이관받을 의사를 우선 확인한 후, 관할 시·도 및 전국 단위에서 이관 가능 여부를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이관받을 마을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에 부쳐야 한다.

제13조(마을기업의 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매년 0월 00일을 말한다.

제14조(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는 마을기업 정보 시스템의 명칭은 마을기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이 마을기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자신의 매출액, 사회적 공헌 활동, 종사자 수 등 필요한 사항을 직접 입력하게 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기업 관리 현황과 관련 시책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할 수 있다.

제15조(마을기업지원기관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지원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원기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지원기관은 해당 지역의 산학협력단·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단체·법인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복수의 기관을 컨소시엄 형태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기업 또는 그 회원이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단체는 지원기관이 될 수 없다.
- ④ 시·도지사는 지원기관을 설치·지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의 시·도지사과 협약을 체결하여 그 소관의 지원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계약 및 협약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지원기관의 설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시·도 지사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공고·심사·추천
- 2. 법 제12조에 따른 마을기업 보조금 운영·관리
- 3.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기관 지정·설치·관리
-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청문
-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독
-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시장등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 지정신청 접수
- 2. 법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 지정 요건의 적격 여부 검토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른 불이행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경 사유만 적용한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	500만원
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다.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마을기업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	100만원

제2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과제

1. 방향성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도출되었으나 시행령 제정만으로는 반영이 어려운 사항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과제로 제시함
- 해당 과제들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이 요구되며, 일부는 법률 개정이 병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과제의 성격과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단기 과제와 정책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함

2. 단기 및 중장기 과제

1) 단기 과제

□ 실질적인 사업기간 확보

- 지방비 확보 지연으로 인해 사업비 교부가 늦어지고 실제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약정 체결일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1년의 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과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 주체의 지침과 법령 간 불일치 해소

- 현행 시행지침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실태조사의 관리 주체로, 마을기업지원 기관을 현장점검 및 조사 지원 역할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은 실태조사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어 지침과 법령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법률이 부여한 구조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실태조사 권한을 위임하고 마을기업지원기관이 위탁을 받아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되, 실태조사 주체에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중장기 과제

(1) 행·재정 지원 방안

□ 농촌형, 도시형으로 구분한 유형별 지원체계 마련

- 농촌형 마을기업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 제한된 소비시장 등 구조적 제약이 있으므로, 도시형 마을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지역 유형별로 필요한 지원 요소를 달리 설계하는 체계 구축이 제안되었으나, 이는 정책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사안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섬
-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농촌형·도시형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간 생산시설 공동활용 체계 구축

- 지역 간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생산시설 공동 활용 체계 구축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요구됨

□ 지역순환경제 기반 신규 사업모델 도입

- 마을기업이 지역순환경제와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 역할을 확장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모델 개발과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도 과제로 제시될 수 있음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나 기본소득마을 모델 등은 지역경제 순환과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 실험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사무장 지원 제도 도입

- 전담 인력 부족으로 대표자에게 핵심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사무장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많은 마을기업은 전담 인력이 없어, 회계 관리, 서류 작성, 온라인 판로 기획 등 주요 업무가 대표자 한 명에게 집중되고 있음
 - 이러한 구조는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유발하여 ‘사무장 지원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사무장 지원 제도는 과거 전북 마을기업과 정보화마을에서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언급되었음

□ 마을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판로 지원 강화

- 마을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판로 확대와 품질 고도화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제품 품질 향상, 브랜드 구축, 홍보 전략 강화 등을 목표로 한 전용 예산 확보가 요구됨
- 또한, 판로 확대를 위해 수도권 내 전용 판매 매장 설치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수도권 내 전용 판매 매장 설치와 같은 유통 기반 확충도 중장기 과제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마을기업을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여성기업 등이 별도의 법적 근거를 통해 공공조달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과 대비됨
 -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추진체계 개선 방안

□ 중앙 단위 지원기관 구축

- DB 구축·관리, 전국 단위 홍보 및 교류 행사(예: 마을기업의 날 박람회)와 같은 광역적 기능은 중앙 수준에서 통합적·전문적으로 수행될 때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그러나 현재 법률에는 중앙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만으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거나 운영체계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 따라서, 중앙 단위 지원기관 구축은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도화에는 추가 논의와 법률 개정이 필요하여 중장기 과제로 제안함

□ 기초지자체 단위 지원기관 구축

- 현재 시·도 단위 마을기업지원기관이 중간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시·군·구 단위에서 보다 밀착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다만, 현행 법률은 시·도 단위 지원기관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초지자체 단위 지원기관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기초지자체 단위 지원기관 구축 여부는 현장 수요와 제도적 필요성을 추가로 검토하고 관련 논의를 거친 뒤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과제로 제시함

□ 마을기업협회 운영 안정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 마을기업협회는 마을기업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마을기업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구성원 역량 강화 교육, 마을기업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기능은 마을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하지만, 현재 협회는 시·도 회비 중심의 재정 구조에 의존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협회의 운영비와 주요 사업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제기된 바 있음
- 따라서, 이번 시행령 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협회가 법정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과제로 제시함

국내 및 해외 문헌

행정안전부. (2024).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25). [보도자료] '5만 마을기업인의 15년의 기다림' 「마을기업법」 제정안 국회 통과.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협동조합 기본법」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정책연구 2025-10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 연구

저 자	김민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발 행 일	2025년 12월 10일
발 행 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소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21(반곡동)
전 화	033-769-9999
홈 페이지	http://www.krila.re.kr
인 쇄 처	웃고문화사 033-748-6577